2020

고용노동 정책

한 권으로 통(通)하는

2020 고유노동부 사업 및 제도





Contents

한권으로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2020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1) 정넌 주가고용 상려금 시원 사업	. 18
(2) 청년내일채움공제 ·····	.20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22
(4) 온라인 청년센터 ·····	. 23
(5) 오프라인 청년센터	· 24
(6) 일학습병행 ·····	· 25
(7) 청년취업아카데미 ·····	· 27
(8)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 29
(9)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30
(10) 해외취업지원·····	·31
(11)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확산 ·····	· 34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12) 모성보호 육아 지원 · · · · · · · · · · · · · · · · · ·	· 36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14)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	·41
(1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 42
(16) 직장어린이집 지원 ·····	· 43
(17)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 45
(18)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신중년, 55⁺ 현역시대를 위한 일할 기회 늘리기

(19)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50
(20)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52
(21)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	53
(22)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55
(23) 생애경력설계서비스	57
(24) 고령자인재은행·····	59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25) 장애인 고용장려금 ····	62
(26)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63
(27)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65
(28)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66
(29)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	67
(30)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	68
(31)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	69
(32)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	70
(33) 중증장애인지원고용·····	71
(3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72
(35) 장애인 인턴제·····	74
(36)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75
(37)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	77
외국인,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38) 고용허가제도	80
(39)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 ····	82
(40)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 제도 ·····	84

	(41)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85
	(42) 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 · · · · · 86
	(43)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87
	(44)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90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45) 고용복지*센터 ······92
	(46)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94
	(47) 취약계층취업촉진99
	(48) 취업성공패키지 ····· 100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
<	최저임금 지원>
	(49) 일자리 안정자금104
<.	고용장려금>
	(50) 고용유지지원금 106
	(51) 고용창출장려금(총괄)108
	(52) 일자리함께하기지원······110
	(53)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 · · · · 114
	(5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116
	(55) 고용촉진장려금118
	(56) 고용안정장려금(총괄)·····121
	(57) 워라밸일자리장려금(구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123
	(58)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25
	(59) 정규직 전환 지원128
	(CO) 초사이이기 기이어져 되어
	(6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130

132
134
135
136
137
138
140
141
143
145
148
150
151
153
154
155
157
158
159
160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	민내일배움카드>	
	(82) 국민내일배움카드····	166
	(82-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168
	(82-2)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169
	(82-3)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	170
	(8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172
<사	업주>	
	(84)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173
	(8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 · · · · · · · · · · · · · · · · ·	175
	(86) 중소기업 훈련 지원·····	177
<기	Eł>	
	(87)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179
	(88)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	182
	(89)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	184
	(90) 숙련기술 장려 · · · · · · · · · · · · · · · · · ·	186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근.	로개선>	
	(91)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	190
	(92)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	192
	(93)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	193
	(94)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195
	(9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198
<차	별개선>	
	(96) 근로자 파견제도 ····	200
	(97)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	205

(121)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245
(122)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247
(123)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 249
<산재근로자>
(124) 산재근로자 직업훈련······250
(125)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251
(126)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 252
(127)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253
(128)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254
(129)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255
(130) 진폐위로금 지급 ······ 256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
(131) 근로시간 면제제도 ······258
(13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 · · · 260
(133) 노동쟁의 조정 ······ 261
(134) 노사협의회 ····· 264
(135) 부당노동행위 · · · · · · 265
(136)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267
<노사협력>
(137)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 · · · · 269
(138)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271
(139)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지원······ 272
(140)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지원 ····· 275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77

찿 아 보 기 <u>○</u>

사업주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원제도

고용서비스 지원(채용 상담 정보제공)

- (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 18
-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22
- (14)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 41
- (38) 고용허가제도 / 80
- (39)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 / 82
- (40)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 제도 / 84
- (43)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 87
- (44)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 90
- (45) 고용복지⁺센터 / 92
- (126)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 252

지원금, 융자 등 지원

- (2) 청년내일채움공제 / 20
-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39
- (16) 직장어린이집 지원 / 43
- (19)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 50
- (20)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52
- (25) 장애인 고용장려금 / 62
- (26)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63
- (27)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65
- (28)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66
- (29)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 67
- (30)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 68
- (31)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 69
- (32)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 70

- (35) 장애인 인턴제 / 74
- (49) 일자리 안정자금 / 104
- (50) 고용유지지원금 / 106
- (51) 고용창출장려금(총괄) / 108
- (52) 일자리함께하기지원 / 110
- (53)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 114
- (5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116
- (55) 고용촉진장려금 / 118
- (56) 고용안정장려금(총괄) / 121
- (57) 워라백일자리장려금(구 시간선책제 전화 지원) / 123
- (58)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125
- (59) 정규직 전화 지원 / 128
- (6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130
- (61) 사회적기업 육성 / 132
- (64)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136
- (75) 소규모사업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 154
- (93)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 193
- (94)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195
- (102)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214
- (106)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 220
- (107) 근로복지기금 지원 / 222
- (108)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컨설팅 지원 / 223
- (109) 우리사주제도 / 224
- (110)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 226
- (116)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 238
- (120) 산재예방시설 융자 / 244
- (121)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245
- (122)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 247
- (125)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 251
- (137)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 269
- (139)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지원 / 272

직업능력개발 지원

- (6) 일학습병행 / 25
- (7) 청년취업아카데미 / 27
- (11)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확산 / 34
- (84)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173
- (8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 175
- (86) 중소기업 훈련 지원 / 177
- (140)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지원 / 275

재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원제도

고용서비스 지원(상담·정보제공)

- (14)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 41
- (18)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47
- (39)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 / 82
- (40)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 제도 / 84
- (41)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 85
- (42) 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 / 86
- (43)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 87
- (44)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 / 90
- (45) 고용복지*센터 / 92

지원금, 융자 등 지원

- (12) 모성보호 육아 지원 / 36
- (1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42
- (28)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66
- (30)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 68
- (75) 소규모사업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 154

- (81) 산재보험급여 / 162
- (101)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 213
- (103) 무료법률 구조 지원 / 215
- (110)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 226
- (11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228
- (112)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 230
- (113)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 231
- (114) 근로자 문화예술제 / 233
- (127)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 253
- (128)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254
- (129)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 255
- (130) 진폐위로금 지급 / 256

직업능력개발 지원

- (23)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57
- (82) 국민내일배움카드 / 166
- (86) 중소기업 훈련 지원 / 177
- (90) 숙련기술 장려 / 186

취업희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

고용서비스 지원(진로지도·직장체험·상담·정보제공)

- (2) 청년내일채움공제 / 20
- (4) 온라인 청년센터 / 23
- (5) 오프라인 청년센터 / 24
- (8)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 29
- (9)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 30

- (10) 해외취업지원 / 31
- (14)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 41
- (21)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 53
- (22)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55
- (24) 고령자인재은행 / 59
- (36)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75
- (37)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 77
- (45) 고용복지*센터 / 92
- (46)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94
- (47) 취약계층취업촉진 / 99
- (48) 취업성공패키지 / 100
- (62) 사회적기업가 육성 / 134

지원금, 용자 등 지원

- (73) 구직급여 · 연장급여 / 151
- (74) 취업촉진수당 / 153
- (76) 자영업자 고용보험 / 155
- (77) 실업크레딧 지원 / 157
- (78)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 158
- (112)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 230

직업능력개발 지원

- (6) 일학습병행 / 25
- (7) 청년취업아카데미 / 27
- (23)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57
- (33)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71
- (3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72
- (79) 건설일용노동자 기능향상 지원 / 159
- (82) 국민내일배움카드 / 166

- (82-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168
- (8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172
- (88)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 182
- (9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 평가 / 193
- (124)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250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알아야할 고용노동정책

고용서비스

- (12) 모성보호 육아 지원 / 36
- (47) 취약계층취업촉진 / 99
- (69) 고용노동 통계 조사 / 143
- (71) 고용보험제도 / 148
- (7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150
- (87)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179
- (9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 198

근로 및 노사 관계

- (68) 고용형태공시제도 / 141
- (91)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 190
- (96) 근로자 파견제도 / 200
- (97)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 205
- (98)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 208
- (99) 최저임금보장제도 / 209
- (100) 임금채권보장제도 / 211
- (104) 퇴직연금제도 / 216
- (105)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 218
- (131) 근로시간 면제제도 / 258

- (13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260
- (133) 노동쟁의 조정 / 261
- (134) 노사혐의회 / 264
- (135) 부당노동행위 / 265
- (136)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267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 (80) 산재보험제도 / 160
- (115) 업종별 재해예방 / 236
- (117) 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239
- (118) 유해작업환경 개선 / 241
- (119) 근로자 건강보호 / 242
- (123)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 249

기타

- (17)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 45
- (6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135
- (65)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137
- (66) 고용위기지역 지정 / 138
- (67) 고용영향 평가제도 / 140
- (70) 인력수급전망 / 145
- (138)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 271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사업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전체 근로자수 증가[®]
 -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은 보험 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 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 *기업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 지원하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2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사업목적

•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

사업내용

- 지원대상: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6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2년형)
 - ** 5인 미만: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 허용
 - **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2년형: 만기금 1.600만원(청년300 + 기업400<정부지원> + 정부900)
 - * 청년은 매월 12.5만원 납입, 기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적립(기업 순지원금 회차당 10만원 별도 지급)
 - 3년형: 만기금 3.000만원(청년600 + 기업600<정부지원> + 정부1.800)
 - * 청년은 매월 16.5만원 납입, 기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분할적립(기업 순지원금 회차당 10만원 별도 지급)
 - * 3년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입 가능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 공고 (고용노동부) 위탁운영기관 공모·선정 (고용노동부) 청년 및 기업의 모집·알선, 청년공제 가입지도, 지원금 신청 접수 (청년공제 위탁운영기관)

사업운영 및 지도·관리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및 개선 (고용노동부)

참여(신청) 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 승인 및 선발(운영기관) → 청약신청(www.sbcplan.or.kr)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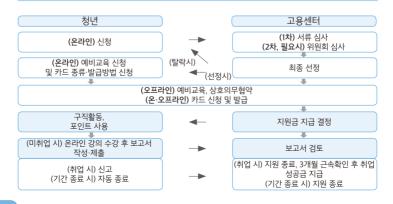
사업목적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1회) 대상
 - * 졸업 요구 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학점 이수자(유예·수료 등)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지원방식: ^①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②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사업추진체계



4 온라인 청년센터



온라인 청년센터(☎ 1811-9876)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

사업목적

● 중앙·지자체 청년정책·공간 정보 및 정책안내·상담을 제공하는 홈페이지 (www.youthcenter.go.kr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한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정책정보: 일자리·금융·주거 등 청년 관련 중앙·지자체 정책 정보를 총괄제공, 맞춤형 정책 정보검색 기능 제공
- 공간정보: 전국 청년공간(고용센터, 자치단체, 민간) 정보제공
- 온라인 상담: 웹페이지 내의 채팅(카카오톡)을 통해 정책 안내 및 개인맞춤형 상담 제공

사업추진체계

• (고용노동부) 예산 출연 → (한국고용정보원) 사업 수행

추진현황

● 162개 중앙·3,561개 지자체 청년정책과 216개 청년공간 정보 종합 제공 중 (19.12월말 기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제공되는 주요 정보》

- 청년정책: 청년정책 통합검색, 정책비교(청년정책 비교 검색)
- 청년공간: 청년공간검색(지도), 공간별 프로그램, 예약사이트 링크
- 청년상담실: 카카오톡상담, 게시판 상담, FAQ
- 청년소식 : 공지사항, 청년소식PICK(취업정보관련 사이트 링크), 청년꿀팁

5

오프라인 청년센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44, 7468)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사업목적

 지역별 청년친화 공간을 활용해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정책 체감도 및 역량 강화

사업내용

- 지원대상: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불문)
- 지원규모: 전국 12개 지자체
- **운영내용**: 청년정책 통합안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등

사언추진체계

사업공고 ('20.1월) 고용노동부 본부 사업심사(1,2차) ('20.2월) 심사위원회 (대표지청·본부) **협약체결** ('20.2월)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자체 사업개시 ('20.2월~)

지자체

지원금 지급 ('20.3월, 6~7월)

대표고용노동(지)청

이행상황 점검 컨설팅·모니터링

관할 고용노동(지)청 한국고용정보원

사업평가 ('20.11~12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 청년센터

- •청년정책 DB 구축 및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youthcenter.go.kr)
- 오프라인 센터 프로그램 (상담 등) 이용 안내 및 예약 서비스 제공

《오프라인 청년센터》

- 온라인 정책DB 활용 및 환류제공 (공간운영자 대상 컨설팅 실시 예정)
-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한 프로그램 홍보로 청년참여 활성화

고용서비스 기관

- •지역 내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와 연계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지역협의회 등)
- 기관별 특성을 살려 서비스 대상 발굴 및 협업 지원



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일학습병행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사업목적

- 독일·스위스式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 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사업내용

- 선정 대상: 해당 분야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선정)
- 학습근로자: 조건 1년이내 신규 입사자, 특성화고·대학 등 재학생
- 지원내용: ▲훈련과정 개발, 학습도구 컨설팅 지원, ▲현장(외)훈련 훈련비, ▲훈련지원금, ▲기업현장교사 수당 및 양성교육 지원
- 자격 부여: 훈련 수료 후, 훈련성과 평가→ 일학습병행 부여(예정)

사업추진체계

① 기업 발굴 및 선정	②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③ 학 습근 로자 선발·계약	④ 현장외훈련 (OFF-JT)	③ 학습근로자 교육훈성과 평가	6
공단, RC 등	기업 (공단 일학습 지원센터, 산업별 협의체 지원)	기업 자체	④ 현장훈련 (OJT)	기업자체 평가 (1차) 외부기관 평가(2차)	자격 부여

② 교육훈련프로그램 인증

공단

행·재정 지원 및 사업관리 (모니터링) 공단 일학습지원센터

참여 유형

	대상 및 유형	명 칭	주요 내용
재	단독기업형		명장기업, 우수기술기업 등 개별 기업에서 현장훈련 (OJT)과 현장외훈련(OFF) 실시
직 자	1		대기업·대학·산업별단체 등이 여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현장외 훈련(OFF-JT) 실시·지원
	<고교 단계> 특성화고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3일)와 기업(2일)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 훈련 →현장성 제고
재 학	< 고교+전문대>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Uni-Tech)	전문대 중심으로 고교과정과 통합하여 기간단축 및 조기입직 유도
생	<전문대 단계> 전문대 2학년	전문대 단계 일학습병행	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조기취업이 가능한 전문대학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 대학교 단계> 4년제大 3~4학년	IPP형 일학습병행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月) 방식 장기현장 실습 + 일학습병행 참여
後 학 습	P-Tech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폴리텍 등과 연계하여 융합·신기술 중심의 고숙련훈련과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후학습과정

주요 특징

-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 내용, 교육 운영방법 등을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주도
- 일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훈련
 - 교육훈련과목, 교육훈련 시간, 현장교사, 평가기준 및 방법 등 교육훈련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이에 따라 교육훈련이 이루어짐
- 생산활동(업무처리)이 이루어지는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교육후련
- 습득한 직무능력을 산업현장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된 평가를 거쳐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학력 중심이 아님) →자격의 통용성 확보

7

청년취업이귀데미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682/8289)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www.hrdbank.net), 직업휴련포털(www.hrd.go,kr)

사업목적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대학생(원) 졸업(예정)자에게 제공 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 청년고용 창출(11년~)

지원내용

- 참여학생: 교육무료수강, 학점인정(협약대학에 한함), 취업연계 지원
- 운영기관: 교육비 지원(80%), 운영기관 매칭(20%)

구분 단기과정 (현장맞춤인재양성)		장기과정 (융합인재양성)	창직과정	新직업 Making Lab*	
대상	참여과정 분야의 전공 및 전공수준의 졸업(예정)자* * '20.2월/8월, '21.2.예정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졸업 (예정)자* * '20.2월/8월, '21.2.예정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34세미만 청년 (창직아이디어 보유자)	
교육 시수	300시간 이내	500시간 내외	200~500시간	300~400시간	
특징	전공자 및 전공자 수준의 현장맞춤형 심화과정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연수생을 대상으로 IT, SW등의 타전공 융합	신직업, 미래직업 창출 (팀프로젝트+교육+ 현장탐방)	창직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화를 지원 (집중 워크숍+ 팀프로 젝트+심화멘토링)	

사업추진체계

고용부 ⇒ (위탁) 한국산업인력공단 ⇒ (공모)운영기관

고용노동부

• 기본 정책방향 결정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도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

-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세부계획 수립
- 운영기관 모집 및 심사 • 운영기관과 약정체결
- 운영상황 관리·감독
- 지원금 지급·관리
- 운영기관 사업성과 평가
- 창직어워드,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홍보

운영기관

(기업·사업주단체·대학·민간훈련기관)

-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성(참여기업, 대학과의 협약체결)
- 사업계획(제안), 협약기업협의회·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참여자 모집·선발, 아카데미 운영(멘토지정 운영 등)
- 월별 운영 상황보고, 실적보고
- 연수생 경력관리 및 사후 관리 등

(연수과정) 연수 및 취업·컨설팅 지원

(창직과정) 참여자 개인별 창직역량 진단 및 평가, 온·오프라인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8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경험 홈페이지(www.work.go.kr/experi)

사업목적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중소·강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입직 유도

사업내용

●지워대상

- (참여자)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 1만명
- * 고교생(1~2학년/3학년), 비진학청소년, 대학생(재학생·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대학의 경우, 자대 재학생·졸업생 외 대상(고교생·타대생 등)을 반드시 30% 이상 포함), 청년장병
- (**운영기관**) 유·무료직업소개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청년고용촉진 비영리 법인 등

●지원내용

- (연수생) 1일(5시간)~5일(40시간) 연수프로그램 참가(참가비 무료)
- (운영기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1일 1인당 평균 13.5만원)

사업추진체계

①사전 진로 탐색

-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방문 등을 통한 진로 상담
-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한 진로검사 및 상담

②과정 신청

일경험 홈페이지 (www. work.go.kr/experi)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프로그램 시청

③연수 진행

- 산업·기업에 대한 이해 및 특강 프로그램 진행
-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 기업체험
 청년고용정책 안내, 프로젝트 발표 및 취업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 내용

미래 유망산업 종류·전망 및 취업전략 등 특강, 신성장 유망 산업분야 기업체험, CEO 특강, 성공사례 탐구, 청년고용정책 안내 등

9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jobyoung)

사업목적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으로, 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 사업방식: 정부·대학·지자체 매칭*, 대학은 민간위탁기관과 컨소시엄 또는 단독 운영(年 사업비의 50% 지원, 대학·지자체 매칭 50%)
 - * 대형: 6억(정부 3억) / 소형: 2억(정부 1억)
- 지원내용: 최대 5년간 운영비·프로그램 지원, 3회 우수평가 시 1년 연장
 - * 대형: 연 사업비 지원 3억, 자대생 +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수행 소형: 연 사업비 지원 1억, 자대생 중심, 거버넌스 기능은 자율

사언추진체계

사업공고		사업심사		협약체결		사업개시
본부	→	심사위원회 (^① 지방청→ ^② 본부)	•	고용센터-대학- 지자체	→	대학

지원금 지급 이행상황 점검 컨설팅·모니터링 사업평가 관할 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본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센터 등

* 사업공고(신규선발)는 연도별 사업예산 및 기존대학 성과평가 등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추진현황

- 전국 105개교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20년 사업예산 220억)
 - *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대학 명단은 고용노동부 및 워크넷 홈페이지 참조

10 해외취업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9997)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

사업목적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등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 해외일자리 매칭 등을 통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

사업내용

○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 목적: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외일자리 정보, 해외 생활정보, 비자취득 등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 K-Move스쿨·인턴 등 각 부처 사업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 K-Move 스쿨

- 목적: 양질의 해외일자리를 발굴,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어학+직무 교육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
-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20년 3.550명)
 - * 다만, 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 참여 가능
- 지원내용: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350만원
 - * 단기(200~600시간 미만) 1인당 최대 580만원, 장기(600시간 이상) 최대 800만원, 트랙॥(1,000시간 이상) 최대 1,350만원 한도

● 사업추진체계

①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으로 온라인 신청

월드잡 접속	마이페이지	지원내용 선택	지원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이력서작성저장 및 공개설정	희망 연수과정 선택	「지원하기」클릭

② 선발방법: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대학 등에서 연수생 직접 선발

해외취업알선

- 목적: 양질의 해외일자리 발굴 및 해외취업 희망자와 구인업체간의 알선 지원
- 지원대상: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해외취업 상담 및 일자리 알선, 근로계약 및 출국 지원
- 사업추진체계



⊙ 국내 해외취업센터

- 주요내용: 해외취업 오프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해외취업 상시채용관 운영 (면접 지원), 해외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등 해외취업 상시 지원
- 이용방법: 해외취업센터 방문
 - * (서울해외취업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층(선릉역 1번출구)
 - * (부산해외취업센터) 부산시 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골드로즈 빌딩 6층(시청역 1번출구)
 - * (군산청년센터) 전북 군산시 내항1길 4 군산상공회의소 3~5층
 - * (통영청년센터) 경남 통영시 충렬로 31

⊙ 해외 K-Move 센터

- 주요내용: 해외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하여 해외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사실 확인,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 지원, 현지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취업 지원
- 현황: 일본(도쿄, 오사카, 나고야), 미국(LA, 뉴욕),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중국(베이징), 캐나다(밴쿠버), 호주(시드니), 유럽(프랑크푸르트), 중남미 (멕시코시티), 중동(UAE),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한국무역협회 등 17개소
- 이용방법: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해외 K-Move센터 사이트 방문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목적 청년의 성공적인 해외취업 및 조기정착·근속 유도
-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이고 6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 단순노무직 배제, 연봉 1.500만원 이상('20년 4.400명)
- 지원내용 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 지원금 우대국가는 최대 800만원, 선진국은 최대 400만원 지급
 - * '16년부터 신흥국 진출 청년의 도전정신을 격려하기 위하여 차등지원하며 취업애로 청년층의 경우 지원금 우대국가와 동일(최대 800만원)

(단위: 백만원)

지급시점	취업 1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신흥국	300	200	300
선진국	200	100	100

● 사업추진체계

월드잡 접속	취업성공	1차 지원금 신청	2차 지원금 신청	3차 지원금 신청
회원가입 = 구직회원 등록	취업인정기준 비 부합	취업 1개월 후	취업 6개월 후	취업 12개월 후

11

평등하 기회·공정하 과정을 위하 불라인도 채용 확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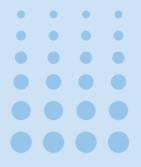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36),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활용지원부 (☎ 052-714-8716), 관련사이트: NCS 종합포털사이트(www.ncs.go.kr)

사업목적

- 공공·민간의 채용과정에서 출신지·가족관계·신체적 조건(키·체중, 사진)·학력 등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은 요구하지 않고.
 -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확산
-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 보장

사업내용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민간 기업의 실력평가 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의 컨설팅 및 인사담당자 교육 실시(~'20.12월)
 - * (공공)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 실시 및 면접신고센터 운영 등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및 내부면접관 상설교육과정 운영
 - * (민간) ▲민간 기업 700여개 컨설팅 지원 및 인사담당자 교육 실시
 - 채용공고 모니터링 등을 통한 공공·민간 기관의 입사지원서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경진대회 실시('20.12월)
- 소규모 공공기관(10개소 내외)을 대상으로 채용계획 수립, 채용공고, 서류심사. 필기평가(직업기초능력 문제 Pool 제공), 면접운영 등 단계별 집중 컨설팅 실시
- •취업준비생을 위한 특성화고·대학 등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운영(수시)
 - * 하·동계 방학시기, 공공기관 공채시기 등 지역별 수요에 맞춰 탄력적 운영
-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취업준비생 전용 웬페 이지 구축·컨텐츠 개발 및 정보제공('20.3월~)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12 모성보호 육아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사업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사업내용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출산 전후 휴가	임신 중인 여성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 (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 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유산 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 사산한 여성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 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함 *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 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준에 따라 고용센터(산휴가 급여 지급	에서 출산전후·	
출산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①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유산사산
전후· 유산 사산 휴가 급여	상동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정부) 최대 월 160 만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통상 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휴가를 사용했을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 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육아휴직급여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 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 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육아 휴직 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이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지급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 기 근로로 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 주는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 해야 함 *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①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②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 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 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으로 지원 -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5/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30일 이상 실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사업목적

- 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구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육아 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촉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등 종료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1. 육아휴직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1년 한도) ※ 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1년을 한도로 하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 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기간을 가난한 기간)
대체 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기간: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육아 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촉) 사용 기간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제도 도입 및 활용 (사업주, 근로자)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지원요건 검토 (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대체인력뱅크(수도권 1577-0221, 지방권 1577-8505) 워크넷(http://www.work.go.kr), 민간 대체인력뱅크(http://www.대체인력뱅크.com)

사업목적

• 출산·육아·시간선택제·병가·교육·산재 등을 사유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사업내용

- 지원대상: 대체인력 구인수요 사업장 및 구직자
- 지원내용
 - (기업) 맞춤인재 추천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서비스, 장기미채용 기업은 맞춤컨설팅을 통해 원인 분석 및 집중 알선 서비스 제공

종 류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80%(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 만원) 지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지원(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

- (구직자) 무료 직무교육 및 소양 교육 실시, 취업자를 위한 직장적응 지원 및 경력개발 상담 진행, 미취업자의 재교육 및 집중 알선과 필요 시 동행 면접 지원 등

사업추진체계

구인/구직 신청 (사업주, 근로자) 상담 및 교육 (고용센터 및 대체인력뱅크 등)

취업 알선 (고용센터 및 대체인력뱅크 등)

1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센터

사업목적

-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비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금근로자
 - * 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지원내용: 총 150만원(월 50만원×3월분)
-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전달체계: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출산급여 신청
(근로여부·소득활동 및 출산사실 증명)
* 지원대상 출산급여 지급

직장어린이집 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 02-2670-0411~25, 대전 🕾 042-870-9111~6, 부산 🕾 051-320-8182~7)

사업목적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 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 예방

사업내용

●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기준 및 한도 >

구분	지원 종류			내 역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대규모		단독	1111717111	3억원	소요비용의 60%
		기업	공동		시설전환비	6억원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단독		4억원	
설 치 비	무상	우선 지원 대상	공	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10억원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 40%)
	지원	기업	꾱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시설매입비	20억원	
			대규모기업		교재교구비	5천만원	소요비용의 60%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우선	선지	원대상기업		7천만원	소요비용의 90%

구분	지원 종류		내 역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JO	인건비 지원	대규모 기업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1인당 월 6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현영, 포퓩교시, 귀시구	1인당 월 120만원	
영 비	중소 기업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육 현원에 따라 월 200~ 520만원	

- <mark>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mark>: ①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②직장보육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통합 지원서비스* 제공
 - * 설치공사 자문, 인력채용 지원, 보육교사 교육 지원, 특수보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사업추진체계

설치비 및 운영비 신청 (사업주) 신청 내역 검토 (근로복지공단) 설치비 및 운영비 지급 (근로복지공단)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 02-2670-0411~25 대전 🕾 042-870-9111~6, 부산 🕾 051-320-8182~7)

개념

 국가(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의 보육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 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의 요지에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장어린이집

기존 어린이집과의 차별성

• 입소순위: 중소기업·비정규직 맞벌이 가정을 최우선 배정

구분	대상자	동순위 내 우선순위 적용
1순위	• 부모가 모두 중소기업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영세 자영업자인 가정의 자녀 * 한부모·조부모 가정인 경우 부모가 모두인 경우로 봄	
2순위	• (맞벌이 가정이면서) 부 또는 모가 중소기업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인 가정의 자녀	•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우선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정의 자녀
3순위	• (홀벌이 가정이면서) 부 또는 모가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인 가정의 자녀	

- * 부·모 모두 공무원/대기업 자녀는 입소 불가
- * 영세 자영업자: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소규모 점포나 사업을 벌이는 사람, 작은 규모의 식당, 슈퍼마켓 등)
- 운영시간: 거점형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기본으로 운영 하되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단축·연장 운영

'18년 시범사업 내용

- ◆선정규모 및 설치지역: 3개소(서울 강서구, 경기 시흥시, 충남 계룡시)
 - * (추진현황) 강서구 '18.12월 개원, 시흥시·계룡시 '20.3월 개원 예정
- 사업방식: 국가(고용노동부)와 해당 자치단체 8:2 매칭방식

'19년 사업 내용(근로복지공단 출연사업)

- 선정규모 및 설치지역: 10개소(광주, 화성, 전주, 서울 마포, 서울 강서구 (2개소), 임실, 영주, 울산 북구, 인천 연수구)
 - * (추진현황) '19년 10개소 선정 완료 이후 설계 및 공사 착수
- 사업방식: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와 해당 자치단체 8:2 매칭방식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9) 여성새로잌하기센터(1544-1199)

사업목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 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동부·여가부 공동주관)
 - *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사업내용(새일센터)

	구분	내용	사업 수행			
고용부	직업상담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각 새일센터에서 5~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	158개 새일센터			
	인턴연계	인턴 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 여가부·고용부 공동 지정 및			
여가부	취·창업지원	취·창업 동아리 운영, 컨설팅 지원				
	경력단절예방지원 고충상담		운영지원			
구인	구인 구직 발굴 및 연계,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기업체 협력망 구축 등					

신청절차

- 새일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관할 지자체의 공모 및 추천심사위원회
 → 지정심사위원회(여가부·고용부) 심의를 통해 지정
-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 지역 새일센터 방문(대표전화 ☎ 1544-1199)



신중년, 55[†] 현역 시대를 위한 일할 기회 늘리기

19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 ('20년까지 한시 지원)
- 지원내용: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한도 지원
- 지원요건: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

< 업종별 지원기준율 >

업종별	지원 기준율	업종별	지원 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인서비스업 (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운수업 (49~52) 가구내고용활동 및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	7%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학구·폐기물서다·권료세생빛환경 복원업(37~39)	770	그 밖의 업종	2%

업종별	지원 기준율	업종별	지원 기준율
	서비업(7	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 /5310)	12%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1.5455	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 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 기타 업종	2	7%

※ 지원금 신청전 3개월·신청 후 6개월 동안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하며, 일용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300인 미만 사업장의 55세 이상 근로자 등)는 업종별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

일자리안정자금과의 관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실제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되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여 대상여부를 확정 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

사업추진체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사업주) 요건심사 (고용센터) 자원금지급 (고용센터)

20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목 적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사업내용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20% 이상의 기업(100인 미만은 제외) 등은 제외
- 지원요건: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 계속고용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지원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20% 한도)

지위절차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사업주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지원금 신청 (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

사업주 ⇒ 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21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에 따라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장년층과 재정구조가 열악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을 매칭 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산,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 대응
 - 퇴직인력의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의 사회공헌 확동 및 일자리 지워

사업내용

●지워대상

- 참여자: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미취업자
-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경력형 일자리의 경우 5년)
- 참여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기관, 행정· 공공기관 등

●지워내용

- (신중년 사회공헌) 식비(6천원) 교통비(3천원) 등 실비 및 활동수당(2천원/ 시간) 지급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수당 지급

● 참여시간

- (신중년 사회공헌) 월 최대 120시간 (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

사업추진체계

운영지침 마련, 참여자치단체 위탁계약 및 사업공고 및 참 참여자 사전교육 사업시행 공고 선정 여자 모집 수요조사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교육기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정산 및 최종결과 사회공헌활동 활동 종료 및 평가 및 사후관리 보고서 작성 -수행 수당 정산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참여자) (참여자, 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

22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중 국번없이 1350)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4060hope)

사업목적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워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 ●지워내용
 - (생애경력설계)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하여 체계적 재취업 활동과 적극적인 경력과리를 지워
 - *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만 50세 이상 신중년을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를 토대로 재취업·창업·귀농귀촌·사회공헌 등 유형별·단계별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재직자) 1:1 상담, 심리안정·변화관리 등 전직교육, 역량진단, 취·창업 정보 제공 등 전직 또는 경력개발을 위한 컨설팅 제공
 - (구직자) 1:1상담, 취업알선, 재취업지원교육, 취·창업 정보 제공, 동아리 운영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와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지원
 - ※ 위 서비스와 연계하여 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구인알선 상담, 지원금 제도 안내 등을 통한 중장년 인력 채용 및 경력관리 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운영계획 수립 (고용부)

운영계획서 및 예산교부 신청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 수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수행 결과 평가 (고용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현황('20.1월 기준)

운영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노사발전재단 서울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7층(공덕동,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02-6021-1100
노사발전재단 금융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6층(공덕동,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02-6021-1336
노사발전재단 서부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3층(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	02-3488-1900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2층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02-2004-7341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첨단산업센터 A동 202호	02-3771-0486
노사발전재단 인천센터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5층(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032-260-3800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2층(가능동, 신동아파라디움)	031-837-2719
고양상공회의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A동 4층(장항동, 라페스타)	031-901-9197
파주상공회의소	경기 파주시 중앙로 328, 8층(금촌동,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8071-4249
노사발전재단 경기센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9, 3층(권선동, 안동빌딩)	031-8014-8500
안산상공회의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3층(고잔동)	031-410-3031
평택상공회의소	경기 평택시 평택로 149, 1층(신대동, 평택상공회의소)	031-8858-3964
노사발전재단 강원센터	강원 원주시 남원로 528, 2층(단구동)	033-735-0967
노사발전재단 부산센터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81, 10~11층(연산동)	051-860-1300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0, 12층(양정동, 양정타임스퀘어)	051-647-045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4층(외동, 한국산업단지공단)	055-266-8317
노사발전재단 울산센터	울산시 북구 삼산중로 144, 2층(삼산동, 을산근로자종합복지회관)	052-289-8975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울산시 남구 대학로 60, A동 3층(무거동)	052-277-9492
(사)한국커리어	경남 거제시 서문로5길6, 3층(고현동,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055-730-1971
노사발전재단 대구센터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7층(동인동2가)	053-550-3000
경북동부경영자협회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8, 2층(대잠동, 경림빌딩)	054-278-5140
경북경영자총협회	경북 구미시 백산로118, 2층(송정동,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054-461-5519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1층(북동,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2-609-8964
노사발전재단 광주센터	광주시 북구 금남로 136, 4층(누문동, 교보빌딩)	062-531-5712
노사발전재단 전북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1, 5층(효자동2가)	063-222-1840
목포상공회의소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2층(상동,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1-280-0571
전남경영자총협회	전남 순천시 우석로 7, 2층(덕월동, 청암대학교 건강복지관)	061-741-0096
노사발전재단 충청센터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8, 15층(탄방동, 한국교직원공제회대전회관)	042-489-3820
대전경영자총협회	대전시 중구 계백로 1712, 6층(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	042-253-7051
충북경영자총협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32, 5층(송정동, 청주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043-221-1397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빌딩 5층	041-559-5762
노사발전재단 제주센터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165, 2층(이도1동,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4-710-4501

23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lifeplan)

사업목적

• 장년에 진입하는 40세부터 생애경력설계를 통해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 · 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도록 함

사업내용

- 사업기간: '15년 ~ 계속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지워내용

- **(재직자)** 연령별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경력자산 발견 및 생애경력설계 지원
- **(구직자)** 중장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취업, 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 설계 지원
- * 워크넷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한 경력개발 준비 지원

프로그램		기초과정		심화	선택과정	
	연령대	3h	3h	3h	3h	2~3h
	40 대 경력전성		변화관리	평판 및 네크워킹 관리	성과관리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재직자	50대 경력확장	나의생애 조망하기	직업역량 도출하기	경력대안 개발하기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60대 경력공유	능동적인 인생을 위한 숨고르기	삶의 가치 발견 하기	삶의 균형 잡기	100세 인생 준비를 위한 뛰어들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프로그램	기초과정		심화과정		선택과정
	1.5~5h	1.5~6h	1.5~3h	1.5~6h	2~3h
구직자	인생 들여다보기	인생 되돌아보기	제 2인생 계획 하기	제 2인생 실행하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사업추진체계



24 고령자인재은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사업목적

● 고령사회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활성화 기여

사업내용

- 지워대상: 만 50세 이상의 장년
- ●지워내용
 -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취업희망 고령자의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
 - 구직등록자 중 취업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50시간 이상)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향상교육 실시

사업추진체계

사업운영계획수립 (고용부)

운영계획서 및 예산교부 신청 (고령자인재은행)

사업 수행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수행 결과 평가 (고용부)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현황('20.1월)

연번	기관명	연락처	연번	기관명	연락처
1	서울특별시중부여성발전센터	02-719-6303	23	양산YWCA	055-367-1144
2	서울특별시서부여성발전센터	02-2607-8794	24	진주YWCA	055-753-6133
3	북부종합사회복지관	02-3391-2217	25	대구달서여성인력개발센터	053-285-1331
4	중계종합사회복지관	02-952-0336	26	포항YWCA	054-274-4444
5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02-916-9193	27	한국산업단지공단대경권본부	070-8895-7714
6	서울북부여성발전센터	02-3399-7638	28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054-635-4562
7	동작종합사회복지관	02-824-7082	29	안동YMCA	054-858-8219
8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	02-867-8219	30	광주YWCA	062-609-1357
9	의정부YWCA	031-853-6332	31	노동실업광주센터	062-224-4139
10	남양주YWCA	031-577-7762	32	전주YWCA	063-224-5501
11	수원 YWCA	031-252-5111	33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	063-833-0334
12	평택YWCA	031-651-7797	34	익산YWCA	063-857-8911
13	춘천YWCA	033-254-4878	35	군산노인종합복지관	063-446-7574
14	속초YWCA	033-636-3525	36	목포YWCA	061-242-1611
15	강릉YWCA	033-651-1385	37	순천YWCA	061-744-9004
16	원주YWCA	033-742-6090	38	여수YWCA	061-665-5060
17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051-807-7944	39	세종YWCA	044-862-0873
18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051-503-8944	40	천안YWCA	041-578-5863
19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051-702-9198	41	충주YWCA	043-845-1929
20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	051-343-5664	42	제천YWCA	070-7116-6775
21	(사)경남고용복지센터	055-261-8523	43	제주YWCA	064-724-2419
22	울산YWCA	052-247-3523	44	서귀포YWCA	064-762-1400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25 장애인 고용장려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0~80만원 지급

< 장려금 지급 단가 >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 1 <u>-1-</u>
지원단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지원단기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 ※ '17년 발생분 까지 경증장애인 연차별 감액(근속 3년이상 30%, 5년이상 50% 감액)
- ※ '18년 발생분부터 경증장애인 감액 폐지 및 6급 장애인 만4년 한시지원 폐지(계속 지급)

사업추진체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지급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 지원내용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 지원(10억원 한도)
- 중소기업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지원(20억원 한도)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초기 창업자금 지원 (1회, 최대 5천만원)
- * 사회적 기업, 현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사업추진체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 제공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모회사의 고용부담금 감면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에서 설립한 자회사(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소유)
 - * '11년 이후 둘 이상의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지원내용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원을 모회사의 장애인 인원으로 산입하여 부담금 감면
- 무상지원금을 10억원 내에서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 시행, 모회사가 자회사 지원 가능 특례 신설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28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도모

사업내용

- 지워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 지원내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직업생활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근로자) 출퇴근 자동차 개조 및 운전보조공학기기

구 분		지 원 한 도
장애인 고용사업주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작업 보조공학기기)	무상 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장애인 근로자-사업주 (출퇴근 차량개조)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당 1,500만원 한도 (사업주는 통근용 승합차 등에 대해 지원)
기기개빌		장애인 적합기기 공모 제안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개발

- * 고용유지조건 지원: 지원기준가액 100만원 이상의 기기(장애인 퇴사시 기기 반납을 조건으로 하며 반납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 무상지원: 지원기준가액 100만원 미만의 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

사업추진체계

사업주신청 (공단지사) 지원타당성 평가 (공단지사) 지원여부 및 지원제품 결정 (공단 지사) 기기제작 및 기기구매 (공단 지사/ 공단본부근로 지원부)

기기 검수 및 수령확인 (공단지사/ 공단본부근로 지원부)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공단 지사/ 공단본부근로 지원부)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력 제고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사업주가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90일 이전에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작업지도원을 선임하여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 실시(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사업추진체계

수급자격 인정신청 (사업체→공단 지사) 수급자격 인정서 ⇒ 발급 (공단지사)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 (사업체) 적격여부검토 (공단 지사) 고용관리비용 지급 (공단지사→ 사업체)

30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의 업무(서류낭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를 지원하는 보조인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단가: 시간당 8,590원 (수화통역 및 점역교정 근로지원인의 경우 10,270원)
 - 본인 자부담: 시간당 300원

사업추진체계

근로지원인 신청 (근로자) → 현장조사 (공단지사) → 서비스여부 및 내용 결정 (공단지사) →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한도, 대출금리 1%, 8년 상화조건(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
 - * 고용의무 장애인의 2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최소 1인 이상)
- 융자금 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생산라인 조정비용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32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고용비용부담 경감과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직장 적응력 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한도 지원, 사업주당 3억원 한도 지원
 -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
 - ※ 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 조건

무상지원 대상시설	지원비율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4천만 원 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계·설치· 구입·수리비용	· · · [저미워 ()[하시: 서에시워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사업주당 3천만 원 한도(장애인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한도)	

※ 기존 지원되었던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는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 내에서 신청 가능)

사업추진체계



33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한 현장체험을 통하여 구직 장애인 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중증장애인의 직무 및 직장적응을 위해 선 배치·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전 훈련(6일 이내)후 현장훈련(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실시, 훈련 사업체에 직무지도원 배치

사업내용

- 지워대상: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 등 지원, 사업주에게는 보조금 지원

무상지	[원 대상시설	지원 금액	
	훈련준비금	40,000원/6일 이상 출석 시	
훈련생	일비	17,000원/1일	
	숙박비	10,000원/1박	
사	업주보조금	19,340원/1일	
직두	·지도원 수당	외부 직무지도원: 최저임금 준용 내부 직무지도원(사업체 근로자): 1일 25,000원	

- 직무지도원 1명당 훈련생 5명 이내로 배치하되, 대상자의 장애정도, 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 운영
- 훈련생 취업 후, 적응지도가 필요한 경우, 직업유지 지원을 위해 최대 12개월 까지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적응지도 실시

사업추진체계



3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 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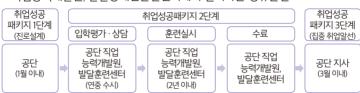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원(5), 훈련센터(맞춤7, 발달19), 공공훈련기관(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장애인
- 지원내용: 훈련수당 지급(※훈련수당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능력개발원(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맞춤훈련센터 (서울, 인천, 경기, 천안아산, 전주, 창원, 제주)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
 - * '20년 발달장애인훈련센터 6개소 추가 설립 예정
 - 공공훈련기관(폴리텍)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교사에게 교사수당 지급)
 - 민간훈련기관 공모를 통해 훈련비* 지원 및 장애인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
 - * 훈련비는 직종별 훈련비용기준단가 등에 따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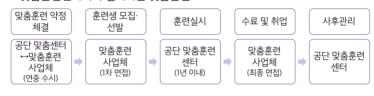
	구 분		훈련생 1인당 지급기준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교통비 식 비	교통비	월 5만원
		월 6.6만원	
교사수당(공	공훈련기관아	한함)	훈련생 1인당 2만원 (최고 10만원 한도)

사업추진체계

•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정규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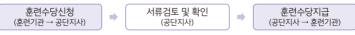
● 맞춤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맞춤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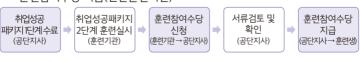
- 공공·민간훈련기관 위탁 훈련
 - 훈련기관 선정(민간훈련기관)



- 훈련수당 지급(공공훈련기관)



- 훈련참여수당 지급(민간훈련기관)



- 훈련장려금 지급(민간훈련기관)

훈련장려금 신청 (훈련기관 → 공단지사) → 서류검토 및 확인 (공단지사) → 훈련생)
--

35 장애인 인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 또는 만50세 이상 장년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체
 - * 뇌병변, 정신, 장루요루,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 시각, 척추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총 10개 장애유형
- 지원요건: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 지원내용: 인턴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원금 지급
 - 인턴 채용 사업체에 인턴기간 동안 월 임금의 80% 지원(최대한도 월80만원, 최대 6개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유지 기간 동안추가 지원(최대 한도 65만원, 최대 6개월)

사업추진체계

참여자 및 실시 사업체 모집· 선정 (공단) 참여자 및 실시 사업체 매칭· 알선 (공단-실시사업체)

약정 체결 및 근무 개시 (참여자-실시사업체)

인턴지원금 신청·지급 (실시사업체-공단) 정규직전환 지원금 신청·지급 (고용유지기간동안) (실시사업체-공단)

36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 * 중졸 및 고교 중도탈락자 등 진로가 불안정한 위기청소년은 만15세 이상 가능
- 지원내용: 단계별 서비스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1단계	구직장애인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실시 심층상담 포함 2회이상 상담실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참여수당 15만원(1단계 필수) 지급
(상담 및 취업계획)	집단 상담프로그 램 희망자(선택)	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이수	추가 참여수당 5만원 또는 10만원 지급
	1단계 기본요건 충족 장애인	장애인 직업훈련(전용반 운영)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지원 고용 등)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연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월 최대 284,000원) 지급 최대 12개월 지급
	- 1단계 기본요건	구직활동 계획 수립 후 이행 시 - 저소득(중위소득50%이하)장 애인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 지급 (최대3개월)
3단계 (취업알선)	충족 장애인 - 2단계 수료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장애인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사업추진체계(절차)



37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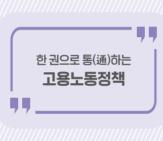
- 지원대상: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 10,000명
 -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운영
- **지원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진행, 보조율 50%)
- 지원내용: 기본운영비(참여자 1인당 48만원)·연계수당(참여자 1인당 20만원)을 수행기관에 지급
 - (기본운영비) 참여자가 기본 동료지원활동, 심층 동료지원활동 참여시 각 1회씩 지급
 - (연계수당) 참여자가 공단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 또는 취업한 경우
 - * 지원고용,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등

사언추진체계

자치단체 선정 및 물량 배정 (고용부)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비 교부 (자치단체)

동료지원가 채용 (수행기관) 참여자에게 동료지원활동 실시 (동료지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장애인고용공단)

평가 및 정산 (자치단체)



외국인, 국내 노동 시장과의 조화

38 고용허가제도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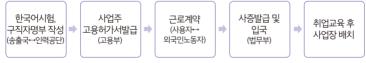
사업목적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 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업내용

⊙ 일반 외국인노동자 도입: 고용허가제(E-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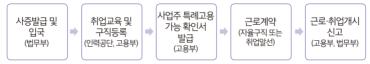
- 허용 기업: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
- 도입 대상: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 절차



* 외국인노동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폐업 등 사업주 귀책 사유는 횟수 불포함)

○ 동포 고용: 방문취업제(H-2)

- 허용 기업:서비스업(음식, 숙박 등 33개 업종),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 도입 대상: 연고 동포(국내 초청). 무연고 동포(한국어시험, 전산추첨)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 절차



* 동포는 입국 후 취업하며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

39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사업내용

- 외국인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 사업장변경 사유(다음 사유 해당 시만 사업장변경 허용, 원칙금지)
 -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 해석상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사업장변경을 인정하여 외국인노동자를 보호
 -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대통령령에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 근무 고라"을 규정)

● 사업장변경 횟수

- 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의 취업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고용 1년 10개월의 취업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위 사업장변경 사유의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횟수에 불포함

사업추진체계

사업장변경 신청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신청 접수 및 구직등록 필증 발급 (고용부)

적격 사업장/외국인 추천(지정알선 금지) (고용부) 사업장변경 처리 (고용허가서 발급 및 근로 계약 체결) (고용부, 사업주, 외국인 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

-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법무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
- *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
- 사업주: 타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외국인노동자 고용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 진행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 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중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사업목적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힘든 근무화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12.7.2. 시행)

사업내용

- **대상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 ① 취업기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 ② 농축산업, 어업, 100인 미만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근무
 - * 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페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③ 재입국 후 근로를 시작하는 때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주요혜택: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면제,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어시험 (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 포함) 및 취업교육 의무가 면제되며, 1개월 후 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 * 성실 재입국 취업은 1회에 한하여 허용, 취업활동 기간은 다시 3년 + 1년10개월간 허용

사언추진절차

재고용만료1개월 전~7일전신청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부)

출국 3개월 후 인력공단의 ● 입국계획에 따라 단체 입국 | ● (외국인노동자)

건강검진 및 보험가입 후 사업주 인계 (한국산업인력공단)

제도변경 사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17.11.30. 공포·시행)되어 비전문취업(E-9) 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미발급(고용허가서도 미발급)

41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사업목적

-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 적용대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노동자
 - 다만, '10. 1. 1. 이후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자진 귀국한 자만 응시 가능하며 일반 한국어시험에서 적용되는 연령제한(40세 미만) 등 각종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함

사업내용

- 대상국가: '11.12월 베트남, 태국 등에 시범 도입 후 '15년부터 전 송출국가 확대 시행(라오스 제외)
- 입국: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신규입국자와 동일하게 구직 신청 및 사업주 알선 등의 과정을 거쳐 입국
 - 출국 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는 출국 전 사업장에 우선 알선하여 신속한 입국을 지워(지정알선)
 - * 사업주와 외국인 모두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정알선을 통한 입국 가능

사업추진체계

특별 하국어 재인국자 지정알선 재인국자 구직자 대상자문자 · 전화 고용허가서 재인국자의 시험 시행 및 한격자 발표 명부 작성 아내 신청 및 발급 송출 및 도입 (공단⇔송출기관) (고용센터(한고원)⇒ (사용자⇔고용센터) (공단⇔송출기관) (구직자⇔공단, 송출기관) 사용자)

* 재입국 임의알선자는 신규 입국자와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

제도변경 사항

● 응시자격 중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합산하여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추가

42 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사업목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E-9) 및 방문취업동포(H-2)에게 고충상담,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등을 통한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 교육 등 지원
 -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9개 거점센터, 35개 소지역센터) 붙임 참조
- 외국인력상담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콜센터, ☎1577-0071) 설치·운영
- 사업장내 애로해소 지원: 외국인노동자의 사용자와 갈등, 일상생활 고충, 언어소통문제 등 사업장 내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방문통역 지원
- **종합체류지원 서비스 지원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축산·어업 등 소수업종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역순회 상담서비스 및 국가별 커뮤니티 현장 지원 서비스 지원
- 사업주 교육: 사업장변경자의 장기근속 유도, 사업주와의 갈등해소,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를 위한 인식전환 교육 등 실시
-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직 중인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적응력 강화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전 지방관서에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외국인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해소, 지원방안 등 혐의
 - *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외국인노동자 단체 등으로 구성

43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사업목적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교육 등 지원
 -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생활 적응지원 및 원활한 취업활동 촉진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활용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
- 지워내용
 - (상담)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충상담 및 갈등 중재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
 - (교육) 외국인노동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직장 문화, 직장 윤리, 한국생활에 필요한 제반 법규 등 교육 실시
 - **(문화행사)**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한국문화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간 교류의 장을 마련
 - (정보제공) 생활·법률 및 직업 관련 정보제공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 정책수립 · 평가
- 제도개선
- 운영기관선정(공모 등)
- 보조금편성 · 교부
- 보조금 집행 · 운영 지도점검

운영기관 (거점센터9개소, 소지역센터35개소)

- 상담. 교육사업
- 센터 운영

87

붙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현황

● 거점센터 (9개소)

연번	센터명	운영기관	소 재 지
1	한국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 구로구
2	의정부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 의정부시
3	김해	인제대학교	경남 김해시
4	창원	사회복지법인통도사자비원	경남 창원시
5	인천	인천경총 및 한국노총 공동수급체	인천 남동구
6	대구	대구경총 및 한국노동 공동수급체	대구 달성군
7	천안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충남 천안시
8	광주	(재)한국능력개발원 및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공동수급체	광주 광산구
9	양산	(사)희망웅상	경남 양산시

• 소지역센터 (35개소)

연번	센터명	주소	연번	센터명	주소
1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서울 구로구	5	(사)국경없는마을 김포이주민센터	경기 김포시
2	엘림외국인지원센터	인천 중구	6	오산이주노동자센터	경기 오산시
3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인천 남구	7	평택외국인복지센터	경기 평택시
4	부천이주민센터	경기 부천시	8	(재)한국이주노동재단	경기 광주시

연번	센터명	주소	연번	센터명	주소
9	천주교의정부교구 구리EXODUS	경기 구리시	23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이주민사목부	광주 북구
10	(사)함께하는 공동체	강원 원주시	24	로드월드비전	전남 순천시
11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충북 진천군	25	여수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전남 여수시
12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충북 청주시	26	전남목포영암 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	전남 영암군
13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충남 아산시	27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제주 제주시
14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대전 중구	28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 수원시
15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포항지부	경북 포항시	29	이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 이천시
16	사)경주외국인센터	경북 경주시	30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 남양주시
17	꿈을 이루는 사람들	경북 구미시	31	파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 파주시
18	천주교마산교구 창원이주민센터	경남 창원시	32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 시흥시
19	진주사랑의 집	경남 진주시	33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20	(사)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부산 사상구	34	글로벌미션센터	경기 안산시
21	천주교전주교구 성요셉근로자의 집	전북 익산시	35	(사)울산외국인센터	울산 북구
22	(사)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광주 광산구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외국인력상담센터(②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②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사업목적

-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 해결 지원
 -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One Call Total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

사업내용

- 지원대상: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
- 지원내용: 고용·체류 지원 업무 관련 민원 상담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현지 언어지원 서비스
 - * 영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니, 스리랑카, 중국어, 몽골, 우즈벡, 캄보디아 등 고용 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언어
 - 상담시간: 09:00~18:00(연중무효)
 - * 상담시간 이후 상담 예약시 익일 근무시간 개시 후 즉시 전화로 답변(Call Back) 제도 운영
 -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행정·생활 기본 정보 안내

사언추진체계

센터설립 및 운영 관련 정책 수립 (고용노동부)

센터설립 센터운영위탁 (한국산업인력공단)

센터운영 (수탁운영기관)

현지어 상담원 배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1577-0071 전화로 유선 상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45 고용복지⁺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복지⁺센터(www.workplus.go,kr)

사업목적

-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 기관 성격: 각 기관의 지위, 조직·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유지한 기관 간 협의체 → 공간 등 하드웨어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연계·통합 추진

「고용복지'센터」의 의미: ▲고용과 복지의 연계(+), ▲고용·복지 등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고용·복지 서비스기관 외 타 기관 참여가 가능한 개방성(+), ▲국민 입장에서는 '1+1' 효과,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사업내용

- 고용센터가 이미 있거나 고용센터를 신설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고용 센터를 중심으로 고용복지+센터를 운영
- 고용과 복지가 결합된 기본형과, 문화 등을 아우르는 확장형을 병행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및 체계도 고용복지[†]센터 사례현의체 운영위원회 실무현의회 고용서비스 복지지워팀 금융 문화 자활지워 서민 복지 생활 고용 일자리 제대군인 새일 담당 문화 서비스 금융 지원센터 센터 센터 셌터 (+자립지원 담당 셌터 센터 상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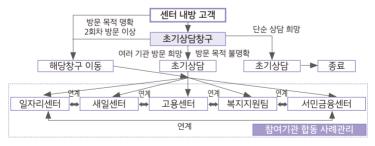
* 자립지원 상담원은 조건부수급자 등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을 위한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담당. 본연의 업무 이외에 자치단체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협조

운영 방향

- 통합 서비스: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방문 자의 편의 도모
- 원스톱: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필요·적합한 고용·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 서비스 상담·시청·수령 가능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 근로빈곤층의 취업장애요인 등을 조기 해소시킴으로써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빈곤층을 고용의 영역으로 끌어내어 탈수급 지원
 - 차상위계층 등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
- 협업: 참여기관 간 협업 및 역할분담을 통해 인력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 으로써 효율성 제고
 - 합동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너지 제고

서비스 프로세스

● 프로세스



 서비스 연계: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 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

복지	근로능력有	고용서비스(기관) 연계		고용
서비스		복지서비스(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必要	서비스
대상자	근로능력 無		복지서비스 不要	내성사

46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워크넷(www.work,go,kr)

취업알선서비스

사업목적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각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

사업내용

● 구직자가 구직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워크넷에 입력·관리하고 구직 희망사항 및 상담결과 등을 고려하여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

채용지원서비스

사업목적

 신속한 구인·구직의 연결 및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일반구직자 등의 취업기회 확대

사업내용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 등의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채용박람회: 주로 외부시설을 활용하여 개최하는 대규모 채용행사로서 구인자와 구직자 간 현장면접 이외에 직업·고용 관련정보나 이력서·면접 클리닉, 훈련·자격상담 등의 부대행사를 병행 실시
- **동행면접**: 면접경험이나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해 채용면접 시 고용 센터 상담자가 동행하여 면접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 직원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채용 심사서류 접수 등의 절차를 고용센터에서 대신 수행하는 서비스

직업지도서비스

사업목적

- 구직자, 학생 등이 자신의 희망, 관심, 자격 및 능력을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 후련,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 수요자 특성에 맞는 직업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에서 직장, 직장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

사업내용

●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인의 특성에 따라 12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취업의욕 향상 및 취업기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3~4일 간 운영하는 집단상담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 상	내용
성취	구직자 전체	취업의욕 증진, 취업정보 수집, 지원서류 작성법, 면접 실습 등
올라	취약 청년층 (NEET)	마음열기, 마음모으기(협력), 의사소통 및 생애설계와 비전수립 등
WiCi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의 취업세계에 대한 이해, 외국인 구직자로서 자존감 향상,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 등
HI	고졸(예정)청년층	고졸청년층의 자기탐색, 일자리탐색, 구직기술 수준 제고
청년취업역량	19~34세 청년구직자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강화 및 역량개발계획수립
행복내일	취업취약계층	의욕강화와 자신감 향상, 자기진단과 생애설계, 취업준비와 구직기술
직업행복	출소예정자	마음열기, 의사소통, 직업탐색, 직업생활. 예절, 구직기술 습득, 행복한 내일설계
CAP+	15~29세 청년 구직자	진로결정을 위한 직업탐색, 강점 강화, 면접 실습 등
취업희망	취약계층 구직자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 자신감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 의사소통 등
 성장	고령 구직자	화 다스리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방법, 대인관계, 구직기술 등

프로그램	대상	내용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주부 등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직종 선정, 셀프마케팅 등(기본· 심화과정)
제대군인 (V-TAP)	제대군인	전직준비 및 동기부여, 직업세계의 이해, 제대군인 적합직종 탐색 및 전직계획 등
생산직 퇴직지원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퇴직에 대한 인식전환, 생산직 관련 퇴직 준비와 인생 설계
사무직베이비부머 퇴직설계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퇴직에 대한 인식 전환, 사무직 관련 퇴직이후 경력설계 및 생활설계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25명 정도의 그룹으로 3시간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참여식)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101	행복한 대화 이끌기	효과적인 대화법 익히기, 화 다스리는 법 익히기 등
취업 의욕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생각 가다듬기, SWOT 분석 등
	나를 이해하기	직업가치탐색, 장점 및 보유능력 확인, 경력기술서 작성 등
	대인관계능력향상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능력, 고객서비스 능력
기초	의사소통능력향상	문서이해능력, 타인 의견 경청능력, 대화법, 전화사용법 등
직업 능력	자기개발능력향상	흥미 · 적성 이해, 자신의 역할 이해, 자기관리, 경력개발 관리 등
	직업윤리	근면성, 정직성, 성실성, 책임감, 봉사정신, 준법성, 직장예절 등
	취업목표 정하기	의사결정과정 간접 체험하기, 합리적 경력개발 목표. 실천계획 수립하기 등
구직	멋진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련 내용 총집합 (참여학습)
기술	면접기술 습득하기 ।	면접기술 관련 총집합 (참여중심 진행)
	면접기술 습득하기 ॥	실전 모의면접
	취업전략 세우기	셀프마케팅, 일자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는 다양한 방법 익히기 (구직망 구축, 사전탐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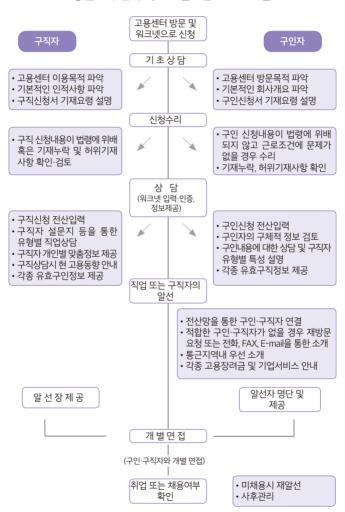
• 취업특강: 실습·체험형 교육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 2시간 강의식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구분	강의명	내 용
구직 기술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공적인 취업준비 전략,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요령	면접의 중요성, 면접의 종류, 면접준비 전략, 면접최종 점검 등
	성공하는 취업정보 수집	고용시장 동향, 효과적인 취업 · 직업정보 수집방법, 허위 구인광고 대처 등
	여성. 주부를 위한 취업특강	여성, 주부의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고령자를 위한 취업특강	고령자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선택	직업심리검사 절차·방법, 직업탐색·선택에 도움이되는 검사 등
기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이해, 임금·근로시간, 부당해고·구제 등
	자녀진로지도	부모 돌아보기, 변화하는 직업세계 이해, 진로지도 포인트 등

• 근로능력수급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 급자(조건부과유예자) 중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중규모 그룹(30명 내외)을 구성하여 1.5시간 강의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내일을 위한 나의 일	• 일에 대한 태도 점검 및 일의 긍정적 의미 확인
내일을 위한 생애설계	• 심리적지지 가능한 자원 안내 • 탈수급 후 제도적 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
내일을 위한 나의 경력	• 더나은 일자리 이동 사례 탐색 및 경력설계 지원
내일을 위한 일자리정보	• 채용정보 탐색방법 등 취업성공전략 탐색
건강한 대인관계	• 대인관계의 중요성, 건강한 대인관계를 위한 대화기법 등
긍정적인 자아	• 자존감 검사 및 긍정적인 자아 형성 지원
새로운 도약	• 취·창업 성공사례(탈수급) 탐색, 직업능력개발 지원정책 안내
성공적인 구직활동	• 구직활동 이해, 이력서 작성 및 면접전략 습득 지원

< 고용센터 구인·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흐름도 >



47 취약계층취업촉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워크넷(www.work.go.kr),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간의 상호 연계 및 보완을 통해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및 자립지원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노숙인, 건설인력 등 취업취약계층 및 일반 구직자
- 지원내용: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활용(필요경비 및 인센티브 제공)하여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수탁(대상)기관	비고
노숙인 취업지 원사업	노숙인(거리·쪽방)에 대한 전담 취업 알선	노숙인시설(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건설인력 취업 지원사업	건설 근로자에 대한 전담 취업알선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채용박람회	구인 · 구직자에게 직접 만남의 장을 제공	행사개최 능력을 갖춘 유·무료 직업 소개사업자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고용센터 內 실직충격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 위탁		
집단상담 프로 그램	고용센터 內 집단상담 프로그램 (CAP+·취업희망·성실 등) 운영을 민간에 위탁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는 사업자	

48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添 국번없이 1350),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워크넷 (www.work.go.kr),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취업성공패키지(www.work.go.kr/pkg)

사업목적

- 참여자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 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I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특정 취약계층*
-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니트족, 미혼모·한부모,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 취업성공패키지Ⅱ: (청년층) 18~34세(소득 무관)*, (중장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35~69세 가구원 등**
- * 대졸자, 고졸 비진학자, 대학(원) 최종학기 재학생 등
- ** 영세자영업자(중위소득 60%초과 100%이하 또는 연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이직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산재장해자 등
- '20년 주요 변경사항: II 유형 중장년층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범위 포함
 - 참여자 고용 사업주에게 1년간 총 720만원 지급(기초생활수급자는 2년간 1.440만원)

●지원내용

구분	1단계(상담·진단)	2단계(직업능력향상)	3단계(취업알선)
패키지 I	• 3주~1개월 • 참여수당최대25만원	 최장 8개월 훈련비최대 500만원 (국민내일 배움카드, 자부담 최대 20%)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 최장 3개월 • 취압성공시최대 150만원 지급
패키지 II	• 1주~1개월 • 참여수당최대20만원	 최장 8개월 훈련비최대 300만원 (국민내일 배움카드, 자부담 15~50%)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 최장 3개월

사업추진체계

신청서제출 (대상자→고용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요건확인 (고용센터) 참여 확정 통보 (고용센터) 단계별 프로 그램 진행 (고용센터, 위탁 기관)

취업 (참여자) 취업성공수당 지급 (고용센터)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

최저임금 지원 고용장려금 사회적기업 지역고용 기 티

49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사업목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사업내용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 원칙
 - (예외): 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全규모)
 - ②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등 종사자(全규모)
 - ③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
 - ④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지원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 중증장애인의 업무(서류낭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를 지원하는 보조인을 지원
- 지원요건: 월 평균보수 215만원이하 노동자 고용*, 1개월이상 고용유지, 최저 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조건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도 지원
 - *합법 취업 외국인, 5인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등

- 지원금액: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1인당월 9~11만원 지원*, 주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 * (5인 미만) 월 11만원, (5인 이상) 월 9만원 지원

사업추진체계

접수			심사·지급	사후관리
오프라인	서면접수& 3공단(복지, 건보, 연금) 전산입력 및 고용센터	→	(심사) 복지공단 + e-나라도우	복지공단 + e-나라도움
온라인	3공단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지급)	

50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지원내용

-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역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 특별고용지원업종(총 근로시간의 10/100 초과휴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지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 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사업추진체계

●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대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사업주)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

사실관계 승인 또는 고용유지조치 심사위원회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 확인 후 불승인 계획서 제출 --= 개최 실시 (사업주 →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 (고용센터 →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 센터) 사업주) 사업주)

* 무급휴업의 경우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고용유지조치(휴업) 필요

51

고용창출장려금(총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장년을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 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업내용

지원 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교대제 도입 확대, ② 주근로시간 단축제 ⑤ 실근로시간단축제, ④ 일자리순환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보다 증가하여야 함	•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40~ 10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10만원~월40만원 지원 * 증가근로자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1인당 20명까지) • [설비투자비 융자] 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10억원한도로 증가근로자 1인당 1억원 지원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우선지원 1%, 대규모 2%)			
7.11471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일 후 3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	•[인건비]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총 2년지원			
국내복귀 기업		유형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지원 		우선지원	180만원	720만원	
		중견	90만원	360만원	

지원 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신중년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② 신중년 적합	유형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적합직무 고용지워	직무에 채용하여 ③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④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우선지원	240만원	960만원
0 1	40 T CHEMO / I E & 6 C/ I B		120만원	48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 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중증 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 포함 * 지원 제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	• [인건비] 신 유형 우선지원 대규모	규 고용 근로자 6개월 단위 360만원 180만원	나수 1인당 연간총액 720만원 360만원

사업추진체계

① 사업계획수립		②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③사업참여신청서(계획서 포함)심사 및 승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7	사업주		고용센터	
④ 심사결과 통보		③ 지원 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⑥ 융자 지원	
고용센터	7	사업주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	
⑦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장려금 지급 및 지도· 점검		⑨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주	7	고용센터	-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지원받고자 할 경우 ②~④ 생략

※⑥은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여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에게만 해당 됨

52 일자리함께하기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 개요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 주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순환제 등

지원 요건

- ① 주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 주 노동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 ② 교대제 도입·확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 ③ 실 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노동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 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 ④ 일자리 순환제: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지원 내용

주 근로시간 단축제

● 신규채용 인건비: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2년 지원

근로자 수	법정근로시간 적용기업 [®]		조기단축기업 [©]	노선버스업종 ^③
C 포시 구		1명 당, 1	개월, 지원금액, 지원기간	
500명 초과	60만	원, 1년		
300~ 500명	제조업	80만원, 2년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이후 40만원, 2년	60만원, 1년
	기타업종	60만원, 1년	17 .02 2, 22	
	제조업	80만원, 2년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이후 80만원	
300명 미만	기타업종	80만원, 1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 업종은 최소 2년, 기타 업종은 최소 1년)	80만원, 1년

- 임금감소분 보전: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할 경우 월 최대 40만원, 1~2년 지원
 -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ᄀᆯᆉᆛᄉ	법정근로시간 적용기업 ^①		조기단축기업 ^②	노선버스업종 ^③
근로자 수			지원기간	
500명 초과	-			
300~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2년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2년	
500명	기타업종	1년		2년
300명 미만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2년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제조업 및	
200 9 11	기타업종	1년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 기타업종은 최소 1년	

- ① 개정 근로기준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 ② 조기단축기업이란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 ③ 노선버스업종이 조기단축할 경우 조기단축기업의 예에 따라 지원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구분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비	우선지원 대상기업	80만원, 1년	40만원, 1년	
제 조	중견기업	40만원, 1년	40만원, 1년	
업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제	우선지원 대상기업	80만원, 2년	40만원, 2년	
조	중견기업	40만원, 2년	40만원, 1년	
업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 지원요건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
- * 증가근로자수: :제도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임금보전은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지워내용

- **(설비투자 융자지원)**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10억원한도로 증가근로자 1인당 1억원 지원
- 상환조건: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 기업 2%
- * 융자가능 은행: 우리은행, 농형은행, 기업은행(융자는 담보·신용 등의 사유로 대행 금융기관이 대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대출할 수도 있음)

<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비 융자 지원대상 시설 등>

투자 종류	지원금의 용도
설비투자비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 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 * 총 설비투자금의 10% 범위내에서 휴게시설, 복지시설 설치에 활용 가능
시설 건립비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 매입비 제외
시설 매입비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 매입비 제외
시설 임차비	일자리 함께하기를 위한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월세는 제외)
시설 개보수비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 전환비	소유. 매입. 임차 건물의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기존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53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사업내용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사업 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총 2년간 지원

유형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그네브리지어	우선지원대상 기업	180만원	720만원
국내복귀기업	중견 기업	9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 지급 기간 및 주기

-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수립
사업 참여신청서(사업 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장려금 신청서 제출
장려금 지급 및 지도 · 점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5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 신중년의 기존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중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한 직무, 신규 생성 직무 중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적합한 직무를 신중년 적합직무로 선정
 - 2018년 55개 직종에서 2019년 소분류와 세분류 혼합 70개 직종(세분류 213개 직종)으로 확대

사업내용

- 지원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 ①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②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 ③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④ 무기계약 체결*
-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

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 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신중년 적합직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 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 기업	120만원	48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수립
사업 참여신청서(사업 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장려금 신청서 제출
장려금 지급 및 지도 · 점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55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 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 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원	180만원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절사)에서 해당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
-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 지원대상 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1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고용노동부)
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고용노동부)

사업추진체계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 취약자 채용 (사업주) → 고용유지 (사업주) → 고용유지 (사업주) → 지급 (사업주) → 자급

56 고용안정장려금(총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정규직전환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지아 이렇 지아이거 지어스즈						
지원 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임금감소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② 2주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임금감소] 단축근로자 1인당 월최대 24~40만원			
	보전금	③ 4대보험 가입④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35시간 이하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간접	(단,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주	모든 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노무비	30시간 이하) ❸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무비] 우선지원 (1개월 단위)	원대상기업	
용니급			• [대체인	[력인건비]		
	대체인력 지원	• 위 요건을 만족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개시일 전 2개월이	구분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1개월 지급액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 간 고용 유지	우선지원 대상	60만원	60만원	
			대규모	30만원	30만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가	• [간접노무비] 주 3회 활용시 1주 10만원, 주 1~2회 활용시 1주 5만 원을 1년간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 別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 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 지원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② 정규직 전환 후에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함	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 • [임금증가 보전금] 전환근로자 1인! 최대 월 60만원 내에서 임금상승분: 80%를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l금상승분의	

지원 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 [간접노무비]			
			구분	지원대상	1개월 단위	
	육아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우선지원 대선	상 30만원	
	휴직 등 부여	*근도자에게 30일 어당 확여하고 작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 1호 인센티브		
출산 육아			육아기 근로시간 - 단축	우선지원 대선	상 30만원	
기				대규모	10만원	
고용 안정			*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 시 추가 지급			
장려금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②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③ 동 휴가·휴직이 끝난 후 당해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대체인력인건비] 해당 근로자 1인당			
	대체 인력 지원		구분	1개월 단위	인수인계기간 1개월 단위	
			우선지원 대상	80만원	120만원	
			대규모	30만원	30만원	

사업추진체계

① 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② 사업참여 ((계획서 포함)		③사업참여신청서 (계획서포함)심사및승인	_
고용노동부	사업주		고용센터	7
④ 심사결과 통보	⑤ 고용장려금 시 도입 및 사업		⑥ 지원금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7
⑦ 지원금 지급 및 지도· 점검	⑧ 사업평	가		
고용센터	고용노동	부		

- ※ 출산육아기 근로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②∼④ 과정 생략
- ※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6개월 이내 최초 장려금 지급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만 지원

57

워라밸일자리 장려금(舊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 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사업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전환 지원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③ 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임금감소 보전금: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사업주 통한 근로자지원) 주15~25시간: 월 최대 40만원 주25~35시간: 월 최대 24만원 (단, 임신 근로자는 월 최대4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한해 단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대체인력 인건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월 60만원, 대규모기업월 30만원 지원(임금의 80% 한도)을 지원(인수인계기간 2개월 추가지원)

●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단,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가능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추진체계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센터→사업주
자율적인 단축제도 운영 및 활용	→	지원금 신청	→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지원금 신청 사업장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 실시
연중 수시		월 단위		계좌 입금

58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사업목적

●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사업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수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직접 지원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비용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0%, (근무혁신 인프라)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50%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제도도입,	지원금	사실관계
제출	심사 및 승인	사업시행	신청	확인 후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금융기관)

○ 참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 참여대상: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일· 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핵심 3분야	실천 내용
오래 일하지 않기	· 정시퇴근하기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등)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등)
	• 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등)
CC CC -1 711	• 똑똑한 회의·보고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회의일정·안건 사전 공유, 메모·구두 ·영상보고 활용 등)
똑똑하게 일하기	• 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 왜·언제까지·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등)
	• 유연한 근무 (업무 질과 성과로 평가, 시차출퇴근, 원격·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사유 묻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등)
제대로 쉬기	• 건전한 회식문화 (회식에 대한 인식 바꾸기, 회식일정 사전공유, 문화회식 활성화 등)
	• 쉴 권리 지켜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여가생활 지원 등)

- * 기본과제: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 참여혜택: 캠페인 참여기업은 홈페이지 등재, 고용장려금 사업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속 근로자는 제휴를 통한 할인혜택 제공
- 참여방법: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 할인혜택, 참여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가능

59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 지원 대상

-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 지원 요건

- ①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③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 ④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 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 (임금증가 보전금)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지원
- (**가접노무비**) 월 30만원 지원
- (인원 한도) 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5인)를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만,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 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함. 지원금 신청 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로 함
-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하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사언추진체계



6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사업목적

- 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구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육아휴직등 부여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등 종료 후 육아 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1. 육아휴직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 휴직자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1년 한도) ※ 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고용한 사업주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1년 한도)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우선 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61 사회적기업 육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사업목적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및 사업 개발비,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간접적 인프라 확충 지원

사업내용

● 인증요건 및 절차

- (요건)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 규정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동일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 수행	영업활동 수행
③ 사회적목적 실현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해당사항 없음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에당시앙 없금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 회사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동일

-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은 지자체 및 각 부처에서 진행

<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인증신청 공고	상담 및 컨설팅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실사
고용부	지원기관, 진흥원 진흥원	지원기관, 진흥원
인증소위원회 사전심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 (평균 2개월당 1회 개최)	인증(인증서 교부)
고용부, 진흥원	고용부	고용부, 진흥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

지역형 예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l사회적기업
고용부	(종합계획 수립 등)	고용부	(종합계획 수립 등)
광역자치단체	(지정공모 및 심사·지정)	각 부처	(지정 공모 및 심사·지정)
기초자치단체	(신청접수, 관리)	지원기관	(신청접수 등 지정심사 업무 지원)
고용부	(심사 및 합동점검 등)	고용부	(심사 및 합동점검 등)

●지원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요건에 따라 일부 지원('20년 지원단가 1인당 월 1,974,030원 기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1인당 월 178,720원, 4년 한도)
사업개발비	브랜드·기술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판로개척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 상품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 지원
금융지원	사회적기업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모태펀드 등 활용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구매하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공고
세제지원	①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도: 1억원+취약계층 상시근로자수×2천만원) ② 취득세·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③ 내국 법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처리.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의 2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처리

62 사회적기업가육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사업목적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기업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 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미만 초기창업자(기업)
- 지원내용: 창업공간, 창업비용*, 창업 관련 교육 및 멘토링, 자원연계 및 후속 지원 등
 - * 창업팀별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팀당 1천만원~5천만원)
- 지원방식: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위탁운영기관을 선정, 상시적·전문적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마련		위탁운영기관 모집·선정		창업팀 모집·서류심사· 심층면접·대면심사
진흥원	•	진흥원	→	창업지원기관
창업자(팀) 최종선정	_	창업활동 지원	_	평가 및 사후관리
진흥원	-	진흥원·창업지원기관	-	진흥원
02 K2, 1020	→	0220 12	→	0 1 2 11 2

6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0)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사업목적

 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사업내용

-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지원사업
 - 지역 내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 일자리사업(광역·기초자치 단체)
- 지역혁신프로젝트
 - 지역의 핵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광역·기초자치단체)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주도로 고용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광역·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
-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
 -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근로자 숙소 임차, 통근버스 임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

사언추진체계



64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정지역에서 고용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 고용위기지역: '20.1월 현재 7개 지역 (지정기간: '18.4.5~'20.4.4) ①군산시, ②울산광역시 동구, ③거제시, ④통영시, ⑤고성군, ⑥창원시 진해구

(지정기간: '18.5.4~'20.5.3) (기목포시·영암군(묶어서 하나로 지정)

사업내용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1년간 지원**
 -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 **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함('20년의 경우 1일 상한액은 6.6만원)

사업추진체계

③ 지역고용계획 ② 고시한 지역으로 사업 ① 고용위기지역 제춬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전·신설·증설에 따른 지정 고시 이내에 이전·신설·증설을 지역고용계획 신고 (고용부) 완료하고 조업개시 (사업주→고용센터) (사업주) ⑤ 해당지역 3개월 이상 ④ 조업시작신고서를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이상 ⑥ 신청내용 검토 후 조업시작후 1월 이내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제출 지원금 신청 (고용센터→사업주) (사업주→고용센터) (사업주→고용센터, 분기별)

65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8)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하여 공표
 -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우수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등 제공

사업내용

- 공시주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공시내용: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
 - *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하여 종합계획(4년) 및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
- 공시방법: 자치단체는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지역 언론, 기관 홈페이지, 주민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시
 - * 공시한 자료는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에도 게시하여 공유
- 평가 및 인센티브: 자치단체의 연차별 공시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사례 확산
 - * 정부시상, 담당공무원 표창, 지역일자리사업 사업비 지원 등

사업추진체계

일자리목표 공시하 시상및 사업계획 점검 및 추진실적 및 대책 수립· 일자리대책 인센티브 ➡ 컨설팅 제공 🖈 확정·공표 평가 공시 추진 제공 (고용부) (고용부) (고용부) (자치단체) (자치단체) (고용부)

66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지정기준과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고용활성화 도모

지정기준

유형	요 건
1유형	 제1호~제3호를 모두 충족 또는 제4호를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폐압 도산 및 경영상 필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함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
2유형	1유형의 제1호~제3호 중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등 고용지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 수 비율 등 실업지표 3.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증감률 등 사업장 변경 4. 지역 주력산업의 고용규모 증감 등 산업구조 변화 5. 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
3유형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의 경제 · 산업 ·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기간

최초 지원기간 최대 2년, 1년의 범위내 2회 연장 가능(최대 4년)

지원 내용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 필요)
- 실업자 심리상담 및 재취업 지원, 전직 및 창업지원,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
 촉진내용을 포함한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

67 고용영향평가제도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044-202-723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하여
 -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 정책 고용영향평가

- (대상) 일자리의 양·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정책·제도·규제
- (내용) 정책 등의 고용효과 분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안 발굴
-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개선권고 → 각 부처는 자발적 개선
- (절차) 대상 선정(고용정책심의회) → 평가 실시(노동연 주관, 6개월 내외) → 평가결과 현의(고용부-부처) → 개선권고 → 개선현황 점검(고용부)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 (대상) 모든 일자리사업, 100억원 이상 SOC·조달 사업, 인력양성 등 일자리 사업유형 으로 구분한 R&D사업 전체, 기타 일자리 관련 일반 재정사업 등
- (내용) 해당 사업의 10억원당 일자리 창출 효과 사전 분석
- (활용) 기재부가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의 중요지표로 활용
-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고용부) → 예산편성지침 반영(기재부) → 일자리 창출효과 산출(노동연→각 부처) → 예산편성시 활용(기재부)

68 고용형태공시제도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044-202-7233) 워크넷 고용형태 공시제 전용 사이트(http://www.work.go.kr/gongsi)

사업목적

-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 서 사회적 여론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 ※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통해 고용현황 공시

사업내용

- 공시 의무 대상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공시내용
 - 공시대상 고용형태: 소속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소속 외 근로자(파견, 용역, 도급)
 - <1>소속 근로자: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②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 ③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소속 외 근로자: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그 '사업장'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

- 공시범위 확대: 상시 1,0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체(법인) 단위의 고용형태 및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도 공시

● 공시방법

-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 기준으로 사용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
- 대상 기업들이 **직접 워크넷**(http://www.work.go.kr/gongsi)에 로그인하여 **입력(공시)**
- * 국민들이 워크넷에서 고용형태 공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조치

●공시기간

- 당해연도 공시결과 및 분석 내용은 매년 7월 대국민 공개
- * 고용안정정보망은 최근 3년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

사언추진체계



69 고용노동통계조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044-202-7244)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

목적

● 사업체의 고용노동관련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제공함으로써 기업·국민· 정부 등 통계 수요자의 고용노동관련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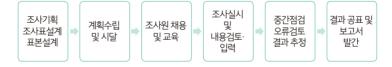
< 고용노동통계조사 현황 >

조사명	조 사 기준기간	조사대상	조사주기	조사항목
사업체 노동력 조사	매월 (마지막영업일)	종사자 1인 이상 40천개 사업체	월 1회	사업체 종사자수, 노동이동(입 · 이직), 빈 일자리수, 임금 및 근로 시간 등 조사
시도별 임 금 및 근로 시간조사	4월	상용 1인 이상 16천개 사업체	연 1회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임금체계, 정년제, 임금피크제 조사	6월말	상용 1인 이상 20천개 사업체	연 1회	기본급 체계(호봉급, 직능급, 직무급 등), 임금피크제 등 도입 현황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4월, 10월	상용 5인 이상 32천개 사업체	연 2회	17개 시도별, 산업별, 직종별 미충원 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조사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4월, 10월 (마지막영업일)	종사자 1인 이상 200천개 사업체	연 2회	시·군·구별 사업체 종사자수, 노동 이동(입. 이직), 빈 일자리수 조사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6월 급여 계산기간	근로자 1인 이상 (특고 포함) 33천개 사업체	연 1회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및 직종에 따른 근로실태(임금, 근로 시간, 보험 등)조사

조사명	조 사 기준기간	조사대상	조사주기	조사항목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현황 조사	6월, 12월	근로자 5인 이상 10천개 사업체	연 2회	기간제법 적용자의 계약만료시 조치사항, 법적용제외자 등
기업체노동 비용 조사	회계연도	상용 10인 이상 3.5천개 기업체	연 1회	기업체의 직접노동비용, 간접노동비용 등 조사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매년 12.31.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공무원 재직기관, 자영 업주, 무급가족 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등을 제외하고 가공. 집계(사업체 및 종사자수)		

^{*} 이상의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체 대상 조사(가구조사 및 산하기관 조사 제외)

사업추진체계



70 인력수급전망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044-202-7247)

사업목적

-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여 인력 불일치를 파악
 -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구직자의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고
 - 중장기적으로는 재학생의 직업진로 선택과 대학·학과의 정원 조정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사업내용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 변화를 전망하며, 크게는 공급전망, 수요전망 수급차 전망을 실시
- * 중장기 인력수급 총량 전망은 격년으로 수정 전망과 번갈아 실시하고, 지역별 인력 수급 전망은 시도별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실시

● 세부 산업·직업 테마 전망

-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세부 산업·직업을 선정하여 이들의 인력수요 등을 심층 분석
- * '19년 산업·직업 테마 전망 주제: ① 전문기술 인적자원의 구인수요 분석 및 전망, ② 자영업 부문 인력수급 전망, ③ 유통업 인력수요 전망, ④ 연구개발서비스업 인력수요 전망, ⑤ 중장년 노동시장 구조 및 인력수요 변화 분석, ⑥ ICT 서비스업 기술수요에 따른 ICT 직종 종사자의 숙련도 미스매칭 분석

사업추진체계







든든한 고용 안전망 확충

71 고용보험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근로자(보수의 0.80%)와 사업주(보수총액의 1.05~1.65%)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적용범위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외국인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외. 다만, '21년부터 기업규모별 단계별 적용), 공무원 등

사업체계

구분	내용	보험료율(%)	부담
실업급여	근로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 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 유 형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1.6	사업주 0.80 근로자 0.80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 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 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 받는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0.85	사업주

고용보험 심사제도

-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 심사처리절차



7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사업목적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실언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적정 운영

사업내용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 공단지사에 제출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사업종료, 근로자 퇴직 및 변경 등 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이직 확인서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의 경우「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대신하여 매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내용확인 신고서' 제출
- 과태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미신고는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거짓신고는 1인당 5~10만원, 최대 300만원)

사언추진체계(지위절차)

신고서 제출 (사업주)

접수 및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사)

결과 통지 (사업주 및 피보험자)

73 구직급여·연장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워크넷(www.work.go.kr)

사업목적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사업내용

- 지원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지워 내용
 - **(구직급여)**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 * 지급수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 액은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원)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현재 연령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장급여)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
- 개별연장: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훈련연장: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에게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을 받는 기간 지원 (최대 2년)
- 특별연장: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 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사업추진체계(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수급자) •

접수 및 구직활동확인(1-4주) (고용센터)

•

급여지급 및 취업상담 (고용센터)

74 취업촉진수당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워크넷(www.work.go.kr)

사업목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사업내용

구 분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조기재취업 수 당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 활 동 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이상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때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지급
이주비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한때	5톤까지 실비 5톤 초과시: 5톤까지는 실비 + 7.5톤까지는 실비의 50% 지급

사업추진체계(지원 절차)



소규모사업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사업목적

● 소규모사업 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내용

- 대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10인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15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사업주
 - *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 연간 2,838만원,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 연간 2,100만원 이상 보유 노동자는 보험료 지원 제외
- 지원내용: 노동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신규가입자 80~90%, 기존가입자 30%)를 지워
- 지원방식: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보험료 지원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공단
보험료 지원금 신청	지원여부 확인/결정	보험료부과 고지 (보조금액을 공제한 금액 고지, 단, 지원금 표시)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확인	국고보조금 지원

7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범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사업목적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사업내용

●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 *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및 만 65세 이후 창업자는 가입 제외

●지원요건

- (실업급여)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
- (직업능력개발훈련)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182만원~338만원)의 2.25%(월 40,950원~76,0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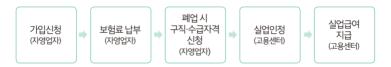
●지원내용

-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기준보수의 60% 지급
- * 지급수준: 선택한 기준보수(182만원~338만원)의 60%(월 109만원~202만원)

가입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제(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기간 1년 이상인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 내일배움카드제: 계좌발급일부터 1년 간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 일부 지원

사업추진체계(지원 절차)



77 실업크레딧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사업목적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사업내용

-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 급여 수급자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 지원신청: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1단계 ⇒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고용센터	신청자	연금공단	연금 공단	신청자	연금 공단
실업크레딧 제도안내	보험료 지원금 신청	지원여부 확인/결정	보험료 부과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보험료 정산

78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공제회(☎ 02-519-201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사업목적

 사업주가 건설노동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 제금을 지급

사업내용

● 가입 대상

- 건설공사: 공공공사 3억이상, 민간공사 100억이상
- 노동자(피공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노동자

● 근로내역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다음달 15일까지 매월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rightarrow 화면 하단의 "퇴직공제 업무처리" 메뉴 \rightarrow "EDI 프로그램 사용신청" 하여 신고

퇴직공제금 지급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 퇴직 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 지급(이자는 월 복리)
 - * 공제부금 일액: ('06년 이전) 2,100원→ ('07년) 3,100원 → ('08년 이후) 4,100원→ ('12년 4월 이후) 4,200원 → ('18년) 5,000원

사업추진체계(지원 절차)

퇴직공제 성립신고 (건설사업주→공제회) *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건설사업주→공제회)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근로자 공제회)

79 건설일용노동자 기능향상 지원



건섴근로자공제회(☎ 02-519-212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사업목적

• 건설업의 특성상 일이 없는 동절기 등에 건설기능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건설일 용노동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안정을 지원

사업내용

- 지워대삿: 만 1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제도 가인 이력자, 건설현장에서 일한 유경험자 중심
 - *제외: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 실업자 훈련 등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자, 부정수급 등으로 수강제한 처분 중인 자 등
- 지원내용: 1일 5시간 이상 훈련을 이수한 확정 훈련생(가입교 기간 수료자) 에게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 1일 훈련비 32천원, 훈련장려금 16천원
- 후련과정: 1일 완성형으로 20일 모듈식 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수준별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운영
 - * 심화과정은 해당 직종 자격취득 등을 목표로 참여하는 자 우대
- 흐려기과: 건섴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공제회는 후련실시 요건을 갖춘 기관*에게 재위탁(공모)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및 그 밖에 기관의 장이 훈련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사업추진체계(지위 절차)

사업신청 (훈련기관)

훈련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공제회, 훈련기관)

훈련실시 (훈련기관)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공제회)

80 산재보험제도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개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적용범위

-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 활동,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
- ●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당연적용, 적용제외 신청 가능, 보험료 1/2 부담),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파견자(보험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 급여 수급자
 - * 9개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전속)
 - **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 중 여객자동운송사업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주, 건설기계사업주, 퀵서비스업자(비전속), 예술인, 대리운전 기사(비전속), 제조업, 자동차정비업,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증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보험료율

- 업종별 보험료율: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35개)로 구분하여 고시
 -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 연도별 보험료율 >

(단위: 천분율)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종류	61	61	61	61	61	62	60	58	58	58	58	51	45	35
평균 보험료율	17.8	19.5	19.5	18.0	18.0	17.7	17.7	17.0	17.0	17.0	17.0	17.0	18.0	1.65
최고요율	611	522	553	360	360	354	354	340	340	340	340	323	282.5	226.5
최저요율	5	6	7	7	6	6	6	6	6	7	7	7	8.5	7.5

^{*} 최저 : 금융 및 보험업(7.5), 최고 : 석탄광업(226.5)

• 개별실적요율: 개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30인이상, 총공 사실적 60억이상)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 2018}년도부터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1.5% 포함

81 산재보험급여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목적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 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급여 종류

-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
 - * 최고보상기준: 1일 214,402원의 70%, 최저임금(1일 66,80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 **장해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 장해등급: 14등급 체계(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 * 장해보상연금: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 장해보상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유족급여: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추정시 유족에게 지급
 - * 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평균 임금의 1,300일분
- 간병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 상시간병급여: 41,170원(1일), 수시간병급여: 27,450원(1일)

-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폐질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
 - * 상병보상연금: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 장의비: 산업재해로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 *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금액 15.54.290원, 최저금액 11.097.760원
- 직업재활급여: 제1급~제12급 장해판정(예정)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 직업훈련비용: 훈련비(최대 600만원/연)
 - * 직장복귀지원금: 제1급~제3급(60만원/월), 제4급~제9급(45만원/월), 제10급~ 제12급(30만원/월)
 - * 직장적응훈련(최대 45만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만원/월)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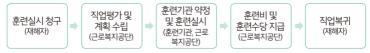
●요양업무



● 산재보험 급여청구



● 직업재활급여: 훈련



● 직업재활급여: 직장복귀지원금

보험급여 청구 (사업주) 급여지급 결정 자급 및 결정내용 통보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직업능력 개발 지<u>원</u>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주 기 티

82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20.1.1.)

사업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사업내용

-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2유형 참여자는 50 ~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천원) 지원
 -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사업추진체계

사업공고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훈련과정 인정	계좌발급 신청	훈련상담 (140시간 이상) 및 카드발급	훈련실시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평가
고용부	훈련기관 심평권	고용부 (지방관서)	실업자 등	고용부 (지방관서)	훈련기관	고용부 (지방관서)	심평원

82-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사업목적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 양성·공급

사업내용

- 지원대상: 실업자, 비진학 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 대학졸업예정자, 사업기간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 기업 노동자,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 등
 -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지원내용

- 훈련기관: 훈련비 전액
- 훈련생: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사업내용

사업공고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훈련과정 인정	훈련상담 및 지원대상 선발·위탁 **	훈련실시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평가
고용부	훈련기관 심평원	고용부 (지방관서)	고용부 (지방관서)	훈련기관	고용부 (지방관서)	심평원

82-2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중국번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사업목적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회를 부여하여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

사업내용

- 지원과정: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일반고 특화심사를 거쳐 '일반고 특화 직업 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 세부 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지원대상: 일반계고에 재학 중인 고3학생
-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 및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공고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훈련기관 선정 공고	훈련대상 선발·위탁	훈련실시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훈련비 정산 및 평가
고용부	훈련기관 심평원	고용부	훈련기관, 고용부 (지방관서)	훈련기관	고용부 (지방관서)	고용부 (지방관서) 심평원

* 단, 일반고 특화훈련은 사업공고 이전에 교육청을 통해 학생 수요조사 실시 → 훈련 과정 선정시 반영

(82=3)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사업목적

- 급격한 산업구조 개편 및 신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수요 증가 등 4차 산업 혁명*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기술·고숙련 인력 양성·공급을 위한 융합형 고급훈련과정 운영
 - *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작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세대 산업혁명 (공장과 제품의 지능화)

사업내용

- **훈련기관 공모**: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을 운영할 역량 있는 기관 및 사업단(컨소시엄)
 - (참여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평생교육 시설 등
- **훈련과정**: NCS Level 5이상 고급과정, 복합문제 해결역량을 갖추기 위해 총 훈련시간의 30~50% 이상 프로젝트 실습 편성
- **훈련생 선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실업자 및 재직자 중 참여 훈련 기관이 자율 선발
- 지원내용: 훈련기관은 훈련비 전액(NCS단가 300% 범위내)
 - 훈련생: 훈련장려금 최대 월 116천원
 -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사업추진체계

사업공고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훈련기관 선정 공고	훈련대상 선발·위탁	훈련실시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훈련비 정산 및 평가
고용부	훈련기관 심평원	고용부	훈련기관, 고용부 (지방관서)	훈련기관	고용부 (지방관서)	고용부 (지방관서) 심평원

8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사업내용

- 취약계층(비정규직노동자, 전직실업자)이 직업훈련 시 장기 저리의 생계비 대부 지원
- 지원대상: 고용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중, 가구의 연간소득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가구별 연간소득 금액이 8,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월 단위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한도, 연리 1%(신용 보증료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한도

사업추진체계

대부신청 (신청자)

대부여부확정 (근로복지공단)

대부약정체결 (신청자, 금융기관, 신청자)

84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사업목적

중소기업 재직노동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신성장동력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지역·산업별 인력양성 기반 조성을 통한 현장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 등

사업내용

- 훈련대상 : 중소기업 재직노동자 및 채용예정자 등
- 지원대상: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우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등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 단체 등
-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간 20억원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받은 연도부터 6년간 의무 운영

7	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연간 20억)	지원조건
시설·장비비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임차료, 증·개축 비용, 장비 구매·리스 비용 등	연간 15억원	대응투자 20%
프로그	램개발비	직무분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구매 비용 등	연간 1억원	대응투자 없음
운영비	인건비	훈련수요 조사, 협약기업 관리 및 지원인력 인건비	연간 4억원	대응투자 20%
도 8 미	일반 운영비	훈련수요 조사비용, 홍보비, 컨소시엄 운영 위원회 운영비용 등	1 22 442	대응투자 없음
훈련비 및 훈련수당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 공동훈련비 지원방식 - 전략분야 훈련과정운영비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	훈련수당은 1개월(120시간) 이상의 채용예 정자훈련 수강생만 지원

^{*} 사업 실적 및 사업운영 기간에 따라 지원수준 차등 지원

사업추진체계



공동훈련센터 유형별 현황(총 206개소, '20.1월 기준)

-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포스코 등 65개소)
 -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73개소)
 -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 지역 공동훈련센터(한국해양대학교 등 68개소)
 - 지역 단위에서 기업의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선정한 기관
- 산업형 공동훈련센터(선정 예정)
 - 산업별 협·단체가 산업별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기관

8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사업목적

• 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수준
훈련비	1일 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집체훈련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 90~100%, (상시 노동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원격훈련 80%), (1,000인 이상) 40% *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유급휴가 훈련인건비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5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 실시	(훈련생 인건비) 소정 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 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
훈련 수당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 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식비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 1일 14,000원 한도(1개월 330천원 한도)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훈련과정 인정신청 (사업주/위탁훈련 기관→한국산업 인력공단) 훈련과정 인정 요건 검토·통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위탁훈련 기관)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 (사업주/위탁훈련 기관→한국산업 인력공단)

훈련비용 신청 (사업주/위탁훈련 기관→한국산업 인력공단)

훈련비용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기관)

86 중소기업 훈련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사업목적

-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경험·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지원
 -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중소기업에 우수 기술·기능 인력인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활용, 숙련기술 등 전수 지원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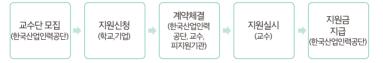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학습조직화 지원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	지원유형(학습조직운영, 우수사례활동, 외부전문가, 학습인프라지원)에 따라 비용의 60% 선지급 후 평가에 따라 40% 후지급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 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추진체계

●학습조직화지원



●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87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052-714-8711) NCS 종합포털사이트(www.ncs.go.kr)

-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 등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13년부터 고용부 총괄, 산업계 주도로 본격적으로 개발, 24대 분야 1,001개 NCS 개발·고시('19.6.1.)
 - * 매년 신산업분야 등 10여개 NCS 신규 개발

< NCS 24대 분야(대분류) >

01. 사업관리	02. 경영·회계·사무	03. 금융·보험	04. 교육·자연·사회 과학
05.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06. 보건·의료	07. 사회복지·종교	08.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09. 운전·운송	10. 영업판매	11. 경비·청소	12.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13. 음식서비스	14. 건설	15. 기계	16. 재료
17. 화학	18. 섬유·의복	19. 전기·전자	20. 정보통신
21. 식품가공	22. 인쇄·목재·가구·공예	23. 환경·에너지·안전	24. 농림어업

• 각 NCS에서는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제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예시: '가전기기 하드웨어 개발' NCS의 내용 >

직무 (NCS)	능력 (능력단위)	세부능력 (능력단위요소)	수 행 준 거 ※ 일부 내용만 발췌	
가전기기 하드웨어 개발	하드웨어 부품 선정	부품의 특성 분석하기	기초 회로에 적용된 부품에 대한 특성을 분석할수 있다. 기초 회로에 적용된 부품에 대한 동작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지 식] 전자부품에 대한 기본 지식 부품사양서	
		부품의 검사항목 결정하기		
		부품 선정하기 :		
	하드웨어 회로 구현설계 :		[기 술]	

⇒ (인력공급)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게 개편하고, (인력수요)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 및 인사관리에 준거로 활용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 추진현황

● NCS 현장성 제고

- 기 개발된 NCS(1,001개)를 검증·보완해 고시(19.6.1), 미래유망분야 중심으로 NCS 추가개발(19년 20개)하여 현장기술변화 반영
- * '19년 스마트공장 시스템 설치, 인공지능 모델링, 블록체인서비스 등 20개

● 현장형 인재육성

- 교육, 직업훈련, 국가기술자격을 NCS 기반으로 개편하여 현장·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
- * 교육: ('18) 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학년부터 전면 개편
 - **훈련**: (15) 全 공공훈련 + (16) 全 민간훈련(3.62만여개) 과정 개편
 - 자격: 자격의 현장성 및 NCS와의 연계성 확대를 위해 NCS와 자격간 대상 범위가 불일치하는 경우, NCS를 기반으로 자격의 분할·통합 등 개편 추진

< NCS 기반 자격 개편 사례 >

- 개선 <mark>패션디자인산업기사는</mark> 패션트렌드 분석 및 샘플패턴 제작, 시제품 개발 등으로 <mark>시험과목을 변경</mark>하여 실무에서 활용되는 내용으로 평가내용 개선
- 분할 화공기사 자격을 산업현장직무를 반영하여 화공기사는 석유화학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정밀화학기사를 신설하여 두 종목으로 분할
- 통합 기계설계산업기사, 치공구설계산업기사는 NCS 능력단위로 보면 자격 내용이 유사하고 치공구설계산업기사의 자격활용도가 낮아 기계설계산업기사로 통합
 - 자격-교육·훈련-경력 간의 상호 호환이 가능한 역량체계(SQF)* 설계, 활용 우수사례 발굴
 - * 산업별 직무역량체계 :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 특수용접기능사, 컨벤션기획사 등 159개 자격종목에 대해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 운영

88 괴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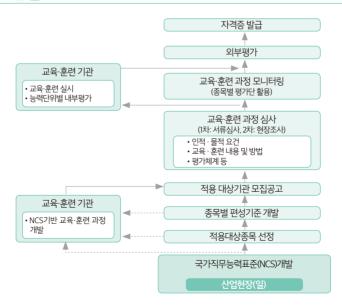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CO-Net 홈페이지(https://c,q-net,or,kr)

개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 * 출석률 <u>75% 이상</u>이면서 내부평가(훈련기관) 및 외부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

추진절차



사업추진체계

주요절차	세 부 내 용	비고
① 대상종목 선정	◈ 매년 다음연도 추가시행 대상종목 선정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
② 종목별 교육·훈련 과정 편성기준 마련	 선정된 자격종목별 NCS 능력단위 기반 교육·훈련과정 내용(필수/선택 능력단위 및 최소 교육시간), 평가방법, 시험문제 원형 개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③ 과정평가형자격 지원단 구성·운영	전용대상 종목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인력풀 확보 (NCS 개발 전문가, 시험위원, ISC 추천 전문가 등)	인력공단
④ 시행계획 수립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 교육·훈련과정 수, 평가의 난이도, 평가일정 등 공고	고용노동부
⑤ NCS 기반 교육· 훈련 과정 편성	◈ NCS를 기반으로 교육·훈련과정 편성	교육· 훈련기관
⑥ 교육·훈련기관(과정) 선정 심사 및 과정 지정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기관 선정 ▷ (심사기준) 필수기준 3항목, 세부기준 6영역 16항목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기관확정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⑦ 외부평가 문제출제	NCS 능력단위 중심의 산업계 주도 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⑧ 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교육·훈련 및 내부평가 실시▷ (이수기준) 75%이상 출석, 전체 내부평가 참여	교육· 훈련기관
-	↑ NCC 기비 ¬ ○ 주거 시니십니 원이/니크 ← □ ○ □	
⑨ 교육·훈련과정운영 모니터링	 NCS 기반 교육·훈련 실시여부 확인(분기 1회 이상) ▷ 지정받은 내용으로 교육·훈련 실시여부 확인 ▷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⑩ 외부평가	● 내부평가 이수자를 대상으로 외부평가 실시▷ 지원단에서 문제출제, 필수능력단위 중심의 평가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⑪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발급	 ⊌ 내부 및 외부평가 결과를 1:1의 비율로 합산하여 80 점 이상인 교육 훈련생을 합격자로 결정 ● 자격증에 교육·훈련을 받은 NCS 능력단위 등 명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89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644-5113 www.ksqa.or.kr) HRD-NET(www.hrd.go.kr)

사업목적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건전성, 역량 및 훈련성과를 평가하여 부실훈련기관 진입을 배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 향상
-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훈련수요자인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인증평가 대상훈련

- 집체훈련: 내일배움카드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계좌제훈련 등), 사업주 위탁훈련, 일반고 특화훈련 등
- 원격훈련: 우편원격, 인터넷원격, 스마트훈련, 혼합훈련 등

인증평가 요소

- 기관건전성: 준법성(행정처분), 재정건전성
- 훈련역량: 훈련성과(취업률, 개설률 등), 훈련인프라, 훈련과정 개발·운영, 수요자 만족도, 훈련이수자평가 결과 등

인증평가 등급 부여

- 집체훈련, 원격훈련 기관마다 '3년인증*' 또는 '인증유예'로 부여
 - * 신규기관은 1년인증, 우수훈련기관은 최대 2년 추가 부여 가능

평가결과의 활용

- 인증평가 결과에 따른 인증등급을 HRD-Net 공개
 - * HRD-Net(www.hrd.go.kr) > 직업훈련정보 > 훈련기관 평가 정보
- 우수사례 공모 절차를 거쳐 **우수훈련기관을 선정**
- 최하위등급(인증유예) 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심사 신청배제**

추진일정

분기	주요내용	세부일정
	2020년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 사전안내	2019. 11. 11.
	2020년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 공고	2019. 12. 13.
~1/4	훈련기관 인증평가 설명회 실시	2019. 12. 16. ~ 20.
	인증평가 신청 및 서류 접수	2020. 1. 28.~2. 11.
	기관건전성평가 결과 통보	2020. 3월 중순
2/4	현장평가 실시	2020. 4월~8월
3/4	현장평가 결과 통보	2020. 9월 중순
5/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2020. 9월 중순~10월 중순
4/4	평가결과 확정 발표	2020. 10월말

90 숙련기술 장려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숙련기술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목적

• 숙련기술장려 활성화로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숙련기술인이 존중받는 능력위주 사회 풍토를 조성

사업내용

●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 숙련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숙련기술인에게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대한민국명장 등 선정 및 홍보

구 분	인원(년)	선정대상	지원내용
대한민국 명장	35명 이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 -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 으로서 숙련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	- 일시장려금 20백만원 - 계속종사장려금 - 증서 및 패 수여 등 - 1명 이상 중소기업 정기근로 감독 면제(3년)
우수숙련 기술자	100명 이내	- 생산업무에 7년 이상 종사 -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	- 일시장려금 2백만원 - 증서 수여 - 2명 이상 중소기업 정기근로감독 면제(3년)
숙련기술 전수자	10명 이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 로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사람	

구 분	인원(년)	선정대상	지원내용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5개 업체 이내	그 하스소시 그스 드이 사연은 하드	- 명판 주어 - 정기그로간도 명제(3년)
이달의 기능 한국인	12명 이내	- 숙련기술 관련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기능인	

● 그 밖에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민간 숙련기술인 단체 지원, 숙련 기술인 창업 및 취업 지원 등

사업추진체계



신청 및 접수 (신청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수숙련 기술인선정·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사업목적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숙련기술인 발굴, 육성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 실업 해소로 국가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국내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 참가(개최 가능)를 통해 우수 숙련 기술인 발굴 및 숙련기술 향상 도모

●지원내용

구 분	참가 자격	지원내용		비고
지방기능	전국대회, 국제대회	1위	금메달, 상금 30만원	•당해연도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대회	입상사실이 없는 자	2위	은메달, 상금 20만원	참가자격 부여 •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66년시행)	(연령제한 없음)	3위	동메달, 상금 10만원	시험 면제
전국기능	지방대회 입상자 중	1위	상장, 상금 1,200만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자격
경기대회	- ' ' ' ' ' ' ' ' ' ' ' ' ' ' ' ' ' ' '		상장, 상금 800만원	부여 •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실기시험
('66년시행)	받은자	3위	상장, 상금 400만원	면제
	전국대회 입상자	1위	동탑산업훈장 상금 6,720만원	• 병역대체복무 - 산업기능요원 편입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중 최고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	2위	철탑산업훈장 상금 5,600만원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시험 면제
('50년 개최, '67년 참가)	연령제한: 22세 (메카트로닉스 등	3위	석탑산업훈장 상금 3,920만원	• 계속종사장려금 지원(5,050~ 12,000천원)
	7개 직종은 25세)	우수상	산업포장 상금 1,000만원	• 참가선수 평균점수 이상을 받은 메달 미획득자

사업추진체계

사업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 및 접수
(참가자, 한국산업 인력공단)

기능경기대회 개최 (17개 시·도, 한국산업 인력공단)

융자금대부 (금융기관)

*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방대회 입상자(1·2·3위)가 출전, 국제기능올핌픽대회는 인력 공단에서 전국대회 입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하여 출전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근로개선 차별개선 임금보장 근로복지

91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사업장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사업내용

-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소규모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점검과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
 - '20년 지원대상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핵심 기초노동법 무료 교육도 병행 (강사는 공인노무사 또는 근로감독관이 수행)
 - * 교육자료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활용(고용노동부 자체 제작)
- 사업기간: 2020.1~10월

지원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8,000개소(업종 무관)
 - * 전체 지원대상 사업장 중 일부는 사업장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지원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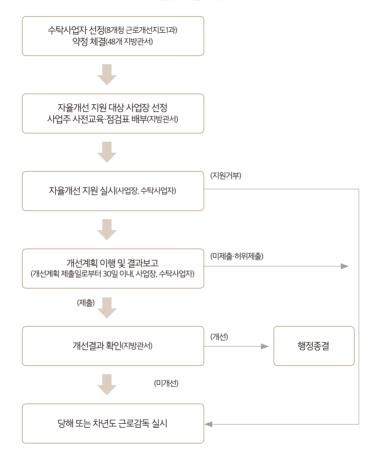
고용부 (예산지원) 사업주단체 등 노무관리전문가 (전담팀구성,사업장의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지원)

사업장 (개선계획 이행) 고용부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 참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체계도

< 일반 자율개선 >



92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97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노동시간 단축 애로 기업 밀착지원 등 현장안착 지원과 근무체계 개편, 고용창출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내용

1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강화

- 맞춤형 솔루션 제공: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해 준비애로 기업 1:1 밀착지원 지속
- 무료상담지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교대제 개편 및 유연근로제 도입 등이 필요한 기업에 전문가(공인노무사 등) 무료 상담 지원

2 노동시간 단축 우수기업 지원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단축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무·관리비용(유연근로제 도입, 업무효율화 등 소요비용) 등 지원 차원에서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계획(유연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관리 강화, 업무 효율화 등)을 제출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300인 미만 기업
- **지원대상 선정**: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기업 중 심사 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단축 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주 노력 정도 및 소요비용 △기업규모 △단축 시간 및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20만원 × 6개월 지원
- 지원방법: 노동시간 단축 계획 및 노동시간 단축 여부를 확인하고,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지원금 지원

93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노사발전재단(☎ 02-6021-1222,1167)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사업 개요

- 혁신의지가 있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 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일터혁신이라?
 - ⇒ '협력적 노사관계'와 '근로자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현장의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기업의 생상성"과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하는 지속적·조직적인 혁신활동

사업내용

-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지원내용: 사업장 희망 분야* 컨설팅 무료지원(10주~21주)
 - *(컨설팅 분야) ①노사파트너십 ②작업조직·환경개선, ③고용문화개선, ④임금체계 개선, ⑤평가체계개선, ⑥장시간근로개선, ⑦평생학습체계 구축, ⑧장년고용안정, ⑨비정규직 구조개선
 - ※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 일부(30%)를 부담
- 신청·선정: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신청사이트*에 신청하면, 사업장 지원심사**를 거쳐 선정('20년 1월~7월 중 상시접수·수시선정)
 -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 ** '사업장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에 대해 종합심사

컨설팅 진행 절차



수행기관별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6516	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	02-2661-7878
시앤피컨설팅	02-6326-1448	아이엔제이컨설팅	031-448-6100
HPC컨설팅	02-555-9839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1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02-3786-0678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60
한국표준협회	02-6240-4784		_

94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愛 국번없이 1350) 일家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

사업목적

●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사업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수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기즈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기준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인사담당자 교육 훈련 비용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직접 지원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비용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0%, (근무혁신 인프라)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50%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제도도입,	지원금	사실관계
제출	심사 및 승인	사업시행	신청	확인 후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금융기관)

○ 참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 참여대상: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일· 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핵심 3분야	실천 내용
오래	· 정시퇴근하기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등)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일하지 않기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등)
Ľ8 [≯] I	• 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등)
ᄄᄄᆠᄓ	• 똑똑한 회의·보고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회의일정·안건 사전 공유, 메모·구두 ·영상보고 활용 등)
똑똑하게 일하기	• 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 왜·언제까지·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등)
	• 유연한 근무 (업무 질과 성과로 평가, 시차출퇴근, 원격·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사유 묻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등)
제대로 쉬기	• 건전한 회식문화 (회식에 대한 인식 바꾸기, 회식일정 사전공유, 문화회식 활성화 등)
	• 쉴 권리 지켜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여가생활 지원 등)

- * 기본과제: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 참여혜택: 캠페인 참여기업은 홈페이지 등재, 고용장려금 사업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속 근로자는 제휴를 통한 할인혜택 제공
- 참여방법: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 할인혜택, 참여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가능

9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개요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주요 내용(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4항)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의무(제76조의3제5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 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시행 시기

• 2019. 7. 16.부터 시행

제도 관련 참고자료

• 사업장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 마련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19.2월) 참고 가능

96 근로자 파면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제도개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 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파견법 제2조 제1호)

파견 대상 업무

-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32개)
 - 이 경우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고용의무로의 전환

-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합법적 파견은 2년 초과, 일시·간헐적 사유의 파견은 6개월 초과 등) 및 무허가파견 등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
 - 아울러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현행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32개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상업무	비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 업무 제외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업무 제외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하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료장비 기사 업무 제외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업무인경우제외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상업무	비고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 제외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 제외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참고 근로유형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법 시행('07.7.1.) 이후 근로계약을 정하는 방법

-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또는 정년제 계약)
- ②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③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특례에 해당하는 계약(2년 초과계약 가능)
- ☞ ②③번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

파견 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도급 근로자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하여 직접 지휘·명령하는 근로자
 - *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핵심은 「지휘・명령권 을 누가 행사하는 가임
 - 만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면, 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됨

'하도급거래'의 정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특수형태 언무종사자

-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나 사용종 속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고용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자
 -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부정한 보험모집인, 레미콘 자차기사,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이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해당
 - ※ 기타 화물차 자차기사, 간병인,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도 특수 형태업무종사자로 논의되고 있음

97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개요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함

차별시정 관할

-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에서 사건을 처리
 -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통보



신청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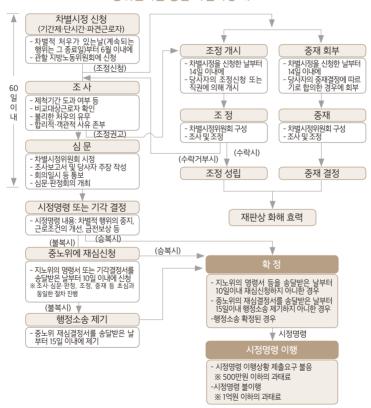
-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 6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동 기간 도과 시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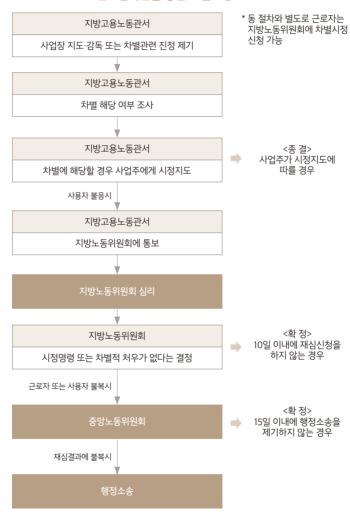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

* 신청인의 성명·주소, 피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일 등을 신청서에 기입하고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입증책임은 사용자 부담

<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개요도 >



< 근로감독관을 통한 차별시정 개요도 >



98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노사발전재단(☎ 02-6021-1230)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사업목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차별진단,
 차별 개선지원, 교육, 상담 제공

사업내용

- 지원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장을 방문하여 차별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 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캠페인

사업추진체계

고용상 차별 진단 (노사발전재단) 차별개선 지원 서비스 제공 (노사발전재단) 사후관리 (노사발전재단)

99 최저임금보장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개요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 * 적용제외 대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결정방법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

< 최저임금 현황 >

년도	2004.9	2005.9 ~ 2006.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시급	2,840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8,350	8,590
인상률	13.1	9.2	12.3	8.3	6.1	2.75	5.1	6.0	6.1	7.2	7.1	8.1	7.3	16.4	10.9	2,87

산입범위

-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에 해당하는 부분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①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부분, ②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 '최저임금 월 화산액'이란:
 -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20년 8,59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기준 208.57시간의 경우: 1,791,616원)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 하려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됨

100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 요건	지원내용 및 한도							
체당금	<일반체당금>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일반체당금>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 근로자: 도산·파산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 에서 퇴직한 근로자	퇴직당시 연령 30세 이상							
		휴업수당 126 182 210 196 147							
	<소액체당금> ・사업주: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 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400만원 한도로 지원 * '19.7.1. 지원한도 인상 예정(400만원							

사업추진체계

● 일반체당금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 확인신청 (근로자)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지방노동관서) 지급의뢰 (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Rightarrow

체당금 지급 및 사업주 대위권 행사 (근로복지공단)

-

● 소액체당금

임금체불 소송 법원에 제기 (근로자)

소액체당금 신청 (근로자)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지급 및 사업주 대위권 행사 (근로복지공단)

101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체당금 관련 상담, 도산 등 사실인정 입증자료 파악 작성 등

사업내용

- 영세 소규모 사업장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비용 지원
- 지원대상: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50만원 이하인 사업장 에서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경우 지원 제외
 - * '19. 3. 1. 지원 대상 확대 예정(월평균보수 250만원 → 3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조력지원 공인노무사 등에게 지원업무의 내용, 체당금 지급 근로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지원
 - * 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 불인정 45만원, 체당금 지급 1명당 6만원(최소 지원금액 57만원)

사언추진체계

체당금 신청 관련 업무지원신청 (근로자) 공인 노무사 등 추천 (선택) (지방노동관서)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 업무 관련 조력지원 (공인노무사)

비용지원 (지방노동관서)

102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
-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사업장 1개소당 7천만원 상한
 - ※ 융자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융자금리: 2.2%(담보), 3.7%(신용, 보증)

사업추진체계

용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사업주)

| 해불사유 및체불금품 확인 (지방노동관서)
| 융자 신청 및 심사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 융자금 지급 및 상환 (금융기관)

103 무료법률 구조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국번없이 13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klac.or.kr)

사업목적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

사업추진체계

체불사건 접수 (근로자, 지방노동관서) 체불금품 조사·확정 (지방노동관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지방노동관서)

무료법률구조신청 (근로자,대한법률구조공단)

구비서류

- 공통 구비서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2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 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중 1개), 도장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
-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채권가압류(예금채권, 공사대금 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유채동산 가압류: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송달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

104 퇴직연금제도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홈페이지(www.moel.go.kr/pension)

개요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 * '05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 * '18년말 기준 36만개 사업장 도입(도입률 27.3%), 561만명 가입(가입률 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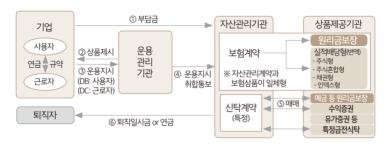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운용 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 가입대상: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방법

- 제도 설정: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도입
-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퇴직연금규약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고
 -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범위, 부담금,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

-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 체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 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
- 제도 운영: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적립금 운용



○ 참고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 분	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IRP)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	금규약	불필요	
사외적립 부담 수준	사외적립 부담 수준	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부담금 납부		사용자	사용자		
수수료부담	-	운용·자산관리: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근로자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	-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연금 수령요건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이상	
중도인출 (중간정산)	가능 (특정한 사유*)	불가 가 (특정한			

-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 ** 6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한 중도인출(중간정산)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사유 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시행일 '20.4.30.)

105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퇴직연금제도 도입 · 운영 교육

- 사업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저조한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 연금제도 도입·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 사업수행 주체: 외부 노·사 단체, 전문가 단체에 민간위탁
 - * (19년) 노무사회·표준협회 / (20년) 미정(1월 중 입찰공고 예정)

● 교육내용

- 도입지원: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100인 미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 개요. 도입 절차. 퇴직연금제도 규약 작성 등 교육
- 운영지원: 퇴직연금제도 기도입 사업장(300인 미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 운영방법, 적립금 운용 등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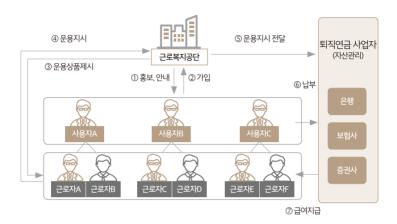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운영

- 사업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이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30인 이하 사업장 및 소속 노동자
- 사업내용: 제도설계, 규약작성·신고 지원, 가입자교육, 운용지시 전달 등 운영 관리업무 수행
 - * 자산관리업무는 금융기관(우리은행, 삼성생명, 신한금투)과 별도 계약 체결



퇴직연금제도 도입문의: 근로복지공단 (☎1661-0075)





106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개요

-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 '83년 근로의욕 항상을 통한 생산성 항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 설치가 권장됨 →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 2010.6.8.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15.7.20.)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 *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는 노사 협의에 의한 자율사항임
- 기금조성: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함,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음
- 기금운영: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
- 사업재원: ▲기금의 수익금,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및 파견노동자의 복지증진에 사용, 중소기업의 경우는 80%) 한도,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이고 일정금액(원청노동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및 파견노동자에게 사용할 경우 5년마다 기본재산의 20%
- 기금의 용도: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명절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등 노동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사업
 -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의 부담의무가 있거나 임금 대체적·보전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세제혜택

- 사업주: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화류소득 계산시 차감
- 노동자: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107 근로복지기금 지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04)

사업목적

● 대기업-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내 복지격차 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및 수준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내근로복지 기금지원	• 협력업체 노동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	• 지출비용의 50% (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50% (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 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 한 공동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설립일로부터 최대5년간 누적 20억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사내→공동기금지원으로 내역변경	• 출연금액의 100%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신설)	• 출연금액의 100%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사업추진체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금법인	공단	기금법인	공단	공단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심사 및 결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지원금 지급	지도·점검 (복지시설)

※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108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컨설팅 지원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사업목적

 기업복지 컨설팅 제공으로 기업규모 간 복지격차 완화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 사업대상: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가입한 기업회원
- **지원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쉽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 턴트를 통해 현장컨설팅 무상제공

컨설팅유형					
기본	심화	도입			
신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관심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개념과 필요성 설명 1기업 당 1회(2시간 이상)	기본컨설팅 연계 또는 기업이 별도 신청 시 제도에 대하여 사업장 진단(설명, 인터뷰),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제도설계, 운영방법 등 종합 컨설팅 1기업 당 1회(2시간 이상)	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기금 버이 서리까지 피우하 모드 저다.			

사언추진체계

	회원가입	컨설팅 신청	컨설턴트 배경	컨설팅 진행	만족도 평가
컨설팅	근로복지넷	①컨설팅유형	컨설턴트가	기본·심화·운영	컨설팅 이용에
	www.workdream.net	②컨설팅 분야	연락 컨설팅	컨설팅 실시	대한
	회원가입(기업)	선택	일정 협의	(회당 2시간)	만족도 평가

109 우리사주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지원센터(☞ 02-6908-8401)

개요

 노동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

운영체계

● 지원 대상



취 득 방 법

- 조한워춬여
- 회사 · 대주주 등의 무상출연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배 정 방 법

-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 계정에 배정 후1년간 의무예탁
-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에게 배정 후 출연자와 협의기간 (4~8년)동안 의무예탁(의결권, 배당금 개인귀속)
-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세제혜택

- 사업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 전액을 손비인정
- 조합원: 출연금 연간 400만원(단, 벤처기업 등의 조합원 1,500만원)을 소득 공제→인출시점 근로소득으로 과세<과세이연, 보유기간 2~4년 미만 보유: 50%, 4년 이상 보유: 75%, 6년 이상 보유: 100%비과세(중소기업)>
 -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110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사업목적

• 기업의 EAP 도입을 촉진하고,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저해요인 해결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기업 및 소속 노동자
- 지원내용: 온·오프라인 전문가 상담 무상제공

< 상담분야 >

직장	개인	가족	기타
	⑥ 정서/성격 ⑦ 경력관리(이직·전직)	(부부관계, 자녀양육 등)	⑩ (보건)건강관리 ⑪ (재무)채무/자산관리 ⑪ (법률)법률관계

< 상담방법 및 이용 가능횟수 >

	구분		이용횟수	제공 시간	비고	
		게시판	무제한	24시간 내 답변		
	온라인 온라인	카카오톡			그근보지네	
개인	는 근다인 	전화상담	1인당 7회 - (고위험군 연장승인	50분 이상	근로복지넷	
		영상상담) (고취임군 인성등인 후 추가 7회)	20도 이경		
	오프라인	근로자	1 1 17-17		장소 상호협의	
기업	오프라인	사내	- 100인 미만: 5회 - 100~200인 미만: 10회 - 200~300인 미만: 15회	1인당 50분 이상	사업장 방문	
		집단	3호	회당 60~90분	사업장 방문	

사업추진체계

회원가입 상담일정 협의 상담신청 상담진행 만족도 평가 근로복지넷 상담사가 전화 상담 이용에 ① 상담유형 온·온프라인 www.workdream.net 연락 상담일정 ② 상담분야 상담 실시 대하 회원가입 ③ 상담사 선택 현의 (회당 50분) 만족도 평가 (개인·기업)

11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사업목적

•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 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내 용			
下 世	종 류	대상 및 조건		
	① 의료비, ② 혼례비, ③ 장례비, ④ 부모요양비, ⑤ 자녀학자금	• 3개월 이상 근속 중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 ('20년 259만원)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⑥ 임금감소생계비	• 6개월 이상 근속 중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0년 181만원)		
용자 대상	⑦ 소액생계비	3개월 이상 근속 중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응자대상 월소득이 증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0년 181만원)		
	⑧ 임금체불생계비	가동 중인(휴업포함) 사업장에 재직 * 건설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용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건설일용노동자는 5일분) 이상 체불 · 배우자 포함 연간 소득액이 중위소득(4인가구) 이하 ('20년 5,700만원) * 건설일용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구분	내 용		
TE		대상 및 조건	
	① 의료비, ③ 장례비, ⑥ 임금감소생계비, ⑧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	
	② 혼례비	• 1,250만원	
융자 한도	④ 부모요양비	•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⑤ 자녀학자금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⑦ 소액생계비	• 200만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융자 금리	• 연1.5% (신용보증료 연 0.9~1.0%)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소득요건 • (생활안정자금) 259만원 이하(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 (생활안정자금) 317만원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융자	자녀 용자 학자금 • 고등학생 1자녀 당 연 500만원		•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 당 연 700만원
	임금체불 생계비	• 1인당 1,000만원	• 1인당 2,000만원

사업추진체계



112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사업목적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노동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생계를 보호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신용보증 신청자
 - *(근복)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고보)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용보증지원 제외 대상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 지원내용: 각 융자사업 한도액으로 지원하되, 1인당 최대 2,000만원 보증지원
 - * 융자 대상자에게 사업별 연 0.7~1.0% 보증료 징수(융자금 지급 시 선공제)

사업추진체계

보증신청 (인터넷 or 방문)

보증대상 결정 (SMS, 이메일 통보)

(근로복지공단)

우리/기업은행 홈페이지 접속

용자약정 체결
(육자신청자)

융자 실행

(융자신청자)

(융자신청자)

l) (융자신청자)

113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사업목적

• 휴양콘도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 및 그 가족의 여가 욕구 충족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에 기여

신청자격

현 행	변 경('20.3.1. 시행예정)
일반근로자(평일)	일반근로자(평일/주말/연휴/성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평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평일/주말/연휴/성수기)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적용자 이용 확대(평일)
기업단위 신청(사업주)	기업단위 신청(사업주, 부서장, 팀장 등)

휴양콘도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로그인·신청	공단	신청인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 or.kr)회원가입	로그인→휴양콘도 지원 신청	→ 근로자의 고용정보, 임금자료 등 이용적격 확인	문자발송 확인

보유콘도 현황

콘도명	구좌수	평형	이용가능지역
계	702구좌	-	
한 화	210구좌	26, 38평	설악, 양평, 용인, 수안보, 산정호수, 백암, 대천,경주(에톤), 경주(담톤), 지리산,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대 명	150구좌	19, 26평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	155구좌	16, 21, 25, 26평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일 성	78구좌	15~28평	설악, 지리산, 부곡, 남한강, 제주, 경주, 무주
금 호	45구좌	17, 27평	설악, 통영, 화순, 제주
리 솜	32구좌	18, 24, 28평	안면도, 덕산
토비스	21구좌	17, 24평	무주, 도고, 제주, 지리산
금강산	11구좌	16, 27, 30평	고성, 제주

1114 근로자 문화예술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사업목적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노동자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참가자격

- 재직근로자(해외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근로자 및 실직일 부터 6개월 이내인 자 포함)
- 단체팀(가요 및 연극 분야)의 경우 사업주 참여 가능, 연극연출의 경우 전문가 참여 가능
- * 기성전문가 및 현직공무원 제외, 정부나 민간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주최한 대회 최고상 수상자, 각 분야 금상 이상 수상자는 동일 분야 참가 불가(타 분야 참가 가능)

● 참가 분야

가요	연극	미술	문학
독창 중창 합창	기성극 창작극 뮤지컬	회화, 서예(캘리그라피포함), 디자인, 공예, 사진(스마트폰 포함)	시, 소설(단편소설, 단편동화), 극작(희곡,단편시나리오, 단편드라마), 수필

•혜택: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등 상장 및 상금

'20년 주요일정 *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 정	내용
가요	1. 20. ~ 3. 21.	온라인 참가신청(동영상) 접수
	2.28.~ 3.21.	지역예선 (본선 진출자 3.30 발표)
	4. 17.	본선 (5.1 KBS 1TV 방영)
연극	1. 28. ~ 3. 21.	온라인 접수
	3. 23. ~ 4. 6.	온라인 심사 (4.6 대상극단 발표)
	5. 9. ~ 6. 28.	공연 및 심사 (7.3 수상극단 발표)
미술	6. 29. ~ 8. 16.	온라인 접수
	8. 17 ~ 8. 22	온라인 심사 (8.24 발표)
	8. 24 ~ 9. 7	실물작품 심사 (9.15 발표)
문학	6. 29. ~ 8. 16.	작품 접수
	8. 17 ~ 8. 22	온라인 심사 (8.24 발표)
	9.15	2차 심사 (9.24 발표)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산재예방 산재근로자

115 업종별 재해예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목적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업종별 위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여, 사망사고 및 중상해 (휴업일수 90일 이상의 부상) 재해 감소에 기여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全) 사업장(제조업 300인 미만, 건설업 120억원 미만, 서비스업 및 운수·창고·통신업 중심)
- 지원내용(안전보건공단 주관)
 - ▶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사망사고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 기술사업(위탁포함)을 연계하는 상시점검*과 특별 기획점검**을 추진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추적 관리
 - * 재해예방 기술지원 사업의 상시·사후관리 시스템 체제 구축
 - ** 사망사고 발생의 특성·시기 등을 고려한 특별점검

▶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위험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업종별 위험 특성에 맞는 사고성재해 예방활동 지원
-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지킴이 순찰,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원 현장 모니터링
- 재해가 다발하는 조선업 등 특수 업종, 산재취약계층(장년,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재해예방활동 전개 등

▶ 법정 위탁사업

- 화재·폭발위험 및 유해·위험물질 제조·취급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공장 등의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확인(산안법 제44조)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장과
-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13개 업종
-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등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 지계획서 심사·확인(산안법 제42조)
- 종합건설업체(약 13,000개소) 및 공공발주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사고사망 만인율 산정(산안법 제10조)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보건지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생협력프로그램」 및 사업장의 자율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구축지원
-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Guide) 개발 및 보급 등 사업장 재해예방활동 지워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위탁)



법정사업 및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

116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목적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하는 등록업체의 제품 품질 수준과 성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자금 또는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취득 또는 제89조에 따른 자율 안전확인 신고를 필한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하는 국내 사업장
 - 최근 2년간 인증취소 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금지 또는 제품 수거· 파기 사례가 없는 사업장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적합 판정 사업장

● 지원내용

-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보건 성능 향상을 위한 제품설계·연구개발 등의 비용
- ※ 사업장당 5,000만원(소요비용의 60% 한도)지원
- 제품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
- ※ 사업장당 5,000만원(소요비용의 50% 한도)지원

사업내용

지원금신청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최종결과평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117 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목적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인증¹, 자율안전확인 신고²¹ 및 안전검사³¹ 제도 운영

사업내용

- 매상 설비: 안전인증 10종*, 자율안전확인신고 23종**, 안전검사 13종***
 - * 안전인증(10종)
 -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고돌라
 - ** 자율안전확인신고(23종)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 가공용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 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톤, 모떼기), 인쇄기
 - *** 안전검사(13종)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신청 및 문의: 공단 6개 지역본부 안전인증부

¹⁾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²⁾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³⁾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사업추진체계

● 안전인증

서면 심사 (해당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제품심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Rightarrow

 \Rightarrow

확인심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자율안전확인신고

신고서 제출 (해당자) 제출서류 확인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자율안전확인증명서 교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검사

검사 신청 (사업주) 검사 실시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18 유해작업환경 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 비용지원, 질식 위험영역 관리, 석면 등 유해인자 취급에 대한 기술지도 및 노출정보 제공,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건 관리 지원 등을 통한 유해작업환경 개선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全)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 위주)
- ●지워내용
 - ▶ 질식 위험영역 실태조사 및 고위험군 밀착관리
 -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질식 3대 위험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도 DB를 구축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밀착기술지도 실시
 - * 산업폐수 배출시설 보유사업장, '1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 및 민간 산업보건 전문기관 수준향상 지원
 -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통해 근로자 건강보호
 - 작업환경 측정결과의 신뢰성 평가를 통해 전문기관의 수준 향상 유도
 - ▶ 근로자 화학물질 노출정보 제공
 - 근로자가 취급하는 미지의 화학물질 종류 및 노출수준에 대한 정보제공
 - ▶ 석면 취급작업의 체계적 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확보, 평가 실시 등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 향상을 통한 직업병 사전 예방
 - 소규모 석면해체·제거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업체의 안전보건기준 준수를 유도하여 석면에 의한 직업병 사전예방
 -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전문기관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보건 관리요령을 지도하는 등 기초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

119 근로자 건강보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목적

- 근로자 건강센터의 설치·운영, 다양한 유해인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활동을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 달성
- 직업병 감시체계 운영 및 근로자 건강모니터링 등을 통한 직업병 진단예방 활동 추진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험가입 전 사업장
- 지원내용
 - ▶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설치·운영
 - 근로자 건강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예방 상담 등 기초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
 - ▶ 건강장해 리스크 평가
 - 직업병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건강 이슈에 적시 대응하고, 뇌심질환, 과로사 등 사업장 건강증진(보호)활동 프로그램 지원 및 개선방향 제시
 - ▶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
 - 미세먼지 노출되는 영세사업장 옥외 근로자에 대한 마스크 지원
 - ▶ 고객응대 종사자 건강보호
 - 고객응대 종사자 보유 사업장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사업장의 감정 노동자 보호대책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

- 질병과 작업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 조사를 통해 질환의 발생 원인 규명 및 대책 제시
- 특수·진폐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를 통한 민간기관의 진단·분석 수준향상 및 신뢰성 제고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및 독성시험을 통해 화학물질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분류하여 노동자 건강보호
-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시험·평가를 통해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

120 산재예방시설 융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544-308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목적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사업내용

● 지워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 지원 조건: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 내용

- 융자 신청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의 타당성 확인
- 투자 설비 또는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 융자금 지급 대상자(우선순위)는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
- 융자 지원 이후 융자 설비 가동 상태 확인 및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사후 기술지도 실시

사업추진체계(지원 절차)



121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544-308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사업목적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내용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명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축공사)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부·공단·민간대행기관의 감독·점검·기술지원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제조·서비스업: 최대 2,000만원
 - * 지원품목: 위험기계 방호장치, 작업공정개선설비, 환기설비, 직업병 예방설비 등
 - 건설업 : 현장 당 최대 2.000만원
 - * 지원품목: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다발하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등)

해당 사업장의 시설개선 총 비용 중 사업주 부담금 50%, 보조금 50%(매칭펀드방식)

· 단, 제조·서비스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총 비용 중 보조금 70% 지원,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총 비용 중 보조금 50~65% 지원, 일부품목에 대해 정액지원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망사고 등 급박한 유해·위험요인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위험요인 개선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70%,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 지원 포함)
- ②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을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관리주체
- ③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설치비용 지원
- 아웃트리거 감지센서, 모니터, 각도·거리센서, 로드셀 등
- * 사업장 당 2,000만원 한도(차대번호별 중복지원 불가), 소요비용의 70%

●지원내용

- 점검·감독·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기술·자금·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
- 보조 대상자는 보조심사위원회 "보조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자금지원 이후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사후기술지워

사업추진체제(지위절차)



122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목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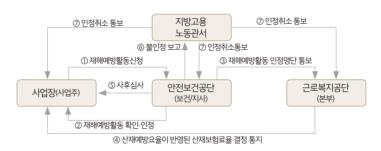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사업내용

- 적용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위험성 평가 20%, 사업주 교육 10%,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 10% 산재보험료 함인*
 - * ① 위험성 평가와 사업주 교육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보험연도 적용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②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복 할인 적용
 - **(재해예방활동 인정)** 위험성 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 노동시간 조기 단축은 인정받은 날로부터 '21.6.30까지

- 인정유효기간: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사업추진체계



사업수행기관

- 고용부: 제도 운영 총괄 및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 법·제도 운영·관리,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등
- 안전보건공단: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인정
 -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사업주 교육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및 사후심사 등
- 근로복지공단: 산재예방요율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결정 및 통지
 - ➡ 재해예방활동 인정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할인

123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89)

사업개요

- <mark>목적</mark>: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합산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관리하고, 하청의 사고사망을 포함한 사고사망만인율 높은 원청은 공표하여,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유도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대상: 도급인의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사업장

사업 절차

사업장	사업장	산재현황	불량사업장	우수사업장
설명회	점검·지도	집계·분석	확정·공표	경진대회
고용부, 공단	고용부, 공단	고용부, 공단 ↔업체	고용부	및 고용부, 공단

사업내용

- 사업장 점검·지도: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하청업체 산업재해현황 파악여부 등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지도
- **산재현황 집계·분석**: 산재현황DB와 연계하여 해당 원청별로 원·하청 근로 자에 대한 재해자 등 현황 집계·분석
- 확정 및 공표: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후 수용여부를 판단하고(필요 시 전문가 검토 회의 등을 통해 심사), 최종 확정하여 불량사업장 공표

124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 촉진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 ※ 산재장해등급 판정일부터 1년이 지났으나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사업으로 별도지원
- 지원내용: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
 - **직업훈련비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그 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예산사업은 최저임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훈련을 받는 시간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사업추진체계

훈련신청 (재해자) 직업평가 및 계획 수립 (근로복지공단) 훈련기관 약정 및 훈련실시 (훈련기관,근로 복지공단)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근로복지공단)

직업복귀 (재해자)

125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산재 이후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또는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실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12개월을 한도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 산재장해 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사업추진체계

산재장해인 원직장 복귀 (산재장해인) 지원금 등 청구 (사업주) 지원금 요건 확인 및 지급,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126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 사업비 30억원('20년)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요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장해판정자 또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 지원내용: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날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 임금의 50% 지원(월 최대 60만원)

사업추진체계

대체인력 고용 (사업주) >> 지원금 청구 (사업주) >> 지원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127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복지증진을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제1급~7급까지의 본인·그 배우자 및 자녀, 장기(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그 배우자 및 자녀
-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최고지급액 500만원 범위 내)
- 선발대상: '20년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 단, 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 3학년은 신청 가능
- 지원기간: '2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단, 연도 중 장해등급 결정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

사업추진체계

산재장학생 선발 공고 (근로복지공단) → 장학금 신청 (해당자) → 적격자 선발 및 통보 (근로복지공단→학교)

128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향상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산재 창업지원결정자('사업자금' 한정),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 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 지원내용: 세대당 2,000만원 한도
 - 의료비, 호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각 1,000만원 이내
 -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 각 1,500만원 이내
- 이자율 및 상환방법: 연리 2%,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2~4년 중 선택
- 대상자 선정방식
 -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사업자금·주택이전비: 수시접수
 - 차량구입비 : 월 2회 선발(재원사정에 따라 변동)
 - ※ 융자재원 부족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사언추진체계

129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 자의 건강관리와 위로금 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8대 광업 등*에 종사(1년 이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진폐 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 ※ 8대 광업(석탄, 철, 텅스텐, 금·은, 연·아연, 규석, 흑연, 활석) 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장해급여가 지급된 광업
- 지원내용: 정기·이직자·정밀 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 및 부대 비용 지급
 - ※ 건강진단비용: 정기·이직자·정밀건강진단 비용
 - ※ 부대비용: 진단수당, 이송료

사업추진체계

진폐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기관)

- 정기, 임시 및 이직자건강 진단 실시
- 제1차 건강진단 및제2차 건강진단(정밀건강진단) 실시

정기, 임시 건강진단결과 제출 (건강진단기관→사업주) 이직자 건강진단결과 제출 (건강진단기관→고용부)

- 흉부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제출

건강진단 비용 청구 (건강진단기관) 진단수당 및 이송료 청구 (수검자)

- 건강진단기관은 진폐법 시행 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 청구
- 수검자는 제2차 정밀건강 진단 기간 동안의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청구

130 진폐위로금지급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
 - ※ 종전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10.11.21, 시행)

사업내용

- 지원대상: 8대 광업 등 분진작업 경력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그 유족
- 지원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 종전에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위로금을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상향 시 장해위로금의 차액을 사망 시 요졸에게 요졸위로금을 지급

사업추진체계

진폐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기관)

진폐판정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 판정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 구축

노사관계 노사협력

131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사관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도입배경

-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 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
-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수가 계속 증가
-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이에 따라 노·사 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09.12.4.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

주요내용

- 기본적으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협의·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에 대해 유급 인정
- 노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함

근로시간면제 한도

● 조합원 규모별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지역분포별

Lll YF	추가 부여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대 상	광역자치단체 개수	시 간		
•전 체 조 합 원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5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10%		
	6~9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20%		
	10개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30%		

- *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 ①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 ② 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3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복수노조 설립 허용

 '11.7.1.부터 기업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도입

-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야 함
 -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교섭 가능
- 교섭창구 단일화 기본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동일한 사업장내 교섭단위 분리 가능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간 자율결정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함
 - ① 자율적 단일화 → ② 과반수 노동조합 → ③ 공동교섭대표단(노사자율 → 안될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
 -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조만 참여

공정대표의무제도 도입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133 노동쟁의 조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개요

노동쟁의를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

조 정

-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 당사자 간의 타협이 이루어 지도록 설득하고, 필요 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노사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 개시 →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할 시 조정 성립 및 노동쟁의 종결, 조정 불성립 시 정당한 파업 가능
 - *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이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 조정기간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내, 공무원노동관계조정은 30일이내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각 10일, 15일이내. 30일이내에서 연장 가능

중 재

- 조정과 달리 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① 노사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또는 ② 일방이 단체 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개시
 -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 할 수 없음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를 결정한 경우 당해 사건은 중재에 회부*
 -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 금지(공무원노조는 파업제한)되며, 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긴급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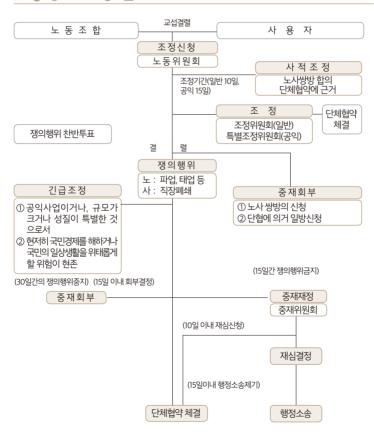
-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여 통상의 조정제도만으로 그 해결이 부적절한 경우 행하여짐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71조 제1항)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함
 -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 4. 은행 및 조폐사업
 - 5. 방송 및 통신사업
- 긴급조정 결정 공표·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통고(고용노동부장관) → 노동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 재개 불가) → 긴급조정에 의한 조정안 수락 및 중재 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사적 조정 · 중재

노사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로부터도 사적 조정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음

- * 사적 조정 시에도 공적 조정의 조정전치기간, 중재 시 쟁의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며, 사적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적 조정과 같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 노사 당사자는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 가능

노동쟁의 조정 절차



134 노사협의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목 적

 열린 경영을 통해 노사간 비전과 목표를 공유,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터혁신을 위한 과제제안 및 실천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

근 거

● 근로자참여 및 현력증진에 관한 법률

설치대상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구성

- 동수의 근로자·사용자 위원(각 3명 이상 10명 이내) <근로자위원 구성>
 -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자와 노조에서 위촉하는 자
 -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

운 영

● 매 3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노·사위원 각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의결

임무

- 협의 사항: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등 17개 사항
- 의결 사항: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5개 사항
- 보고 사항: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등 4개 사항

135 부당노동행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부당노동행위란?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이하 '법')」 제81조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부당노동행위 사례(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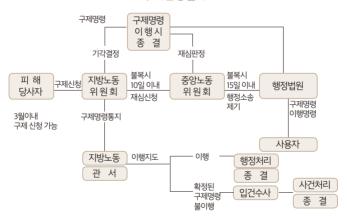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등 행정관청에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하거나 반대로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입·방해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구제절차

●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 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법 제82조제1항)
- 다만,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함(법 제82조제2항)

< 구제신청절차 >



●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발)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90조)
- 부당노동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병행할 수도 있음



136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

개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

구제신청 방법

-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 * 제척기간으로 동 기간 도과 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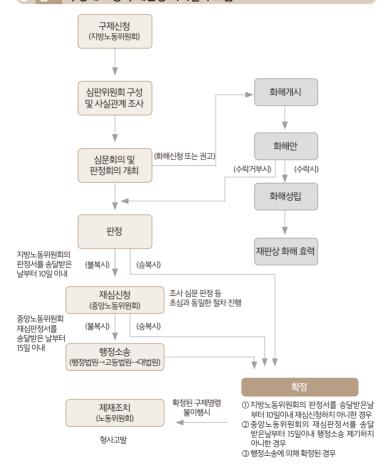
- 사건접수 후 당사자의 이유서, 답변서 제출을 비롯한 사건 조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당사자 신청이나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 연장 가능)하고,
 - 심문회의 개최 후 최종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 송부
 - 다만, 당사자 간 '화해'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작성으로 사건 종료(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

- ●월 평균임금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등*을 신청한 경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무료로 선임해 주는 제도(근로자만 신청 가능)
 - * 노동위원회 소관사무(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

● 지원 내용: 이유서·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구제신청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일체의 법률 서비스

○ 참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처리절차 흐름



137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노사발전재단(☎ 02-6021-1058~62) 노사박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사업목적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 일터 혁신 등을 도모 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지원대상**: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또는 사업장 및 단체 사업장
 -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하였거나. 3년 연속 지원 받은 후 1년 미경과 사업장
- 지원내용: 단위 사업장 3천만원, 단체 사업장 4천만원 한도로 지원
 - * 총 프로그램 예산액의 10% 이상 자체부담 (단.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30% 이상)
- 지원대상 프로그램(프로그램 중 2가지 이상 필수 선택)

분 야	필수 프로그램 세부내용(예시)	
1.공생발전 프로그램	1-1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1-2 원·하청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2.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2-1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완화 프로그램 2-2 비정규직·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3.(고용노동분야) 정책적·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3-1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3-2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3-3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프로그램	
4.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프로그램	4-1 비정규직·파견·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배려 등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를 통해 접수

사업추진체계

④ 지원현정체결 ① 신청 ② 1차심사 ③ 2차심사 및 선정 고용노동부/노사발전 노사파트너십 노사발전재단과 지방고용노동청 재단 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사업장간 지원협정 • 심사위원회 지원 대상프로그램 체결 신청 선정 ⑤ 지원 ⑥ 사업종료 및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지원대상 사업장 재정지원 지원대상 사업장은 사업종료 후 결과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현장지도 점검. 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등 프로그램 지원협정 종료

138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601, 759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자치단체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노사협력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근거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전을위해 고용·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심의하는 회의체
- 지원내용: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 지원, 파트너십 구축, 회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원
 - *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80백만원,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40백만원 한도 지원(재정 자립도 고려 광역은 45~55%, 기초 최대 15~25% 지방비 매칭 조건 지원)
 - 본회의 및 하부협의체 개최 비용,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제 관련 지역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 체결 등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추진, 광역지자체 사무국 운영비 등

사업추진체계

,	나업공모	사업	신청	지원대상 선정·심사 교부결정 통보					사업추진		
고	용노동부	자치	단체 	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노 →자치	· ·	⇒	자치단체		
	성과향상 및 중간점			최종사업 실적보고 제출		사업	l평.	가			수자치단체 정부포상
⇒ ¯	고용노동 노사발전		× 7	치단체	⇒ `	고용노 외부	\sim		→ _	ュ	용노동부

139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지원



고용노동부(☎ 044-202-7598), 노사발전재단(☎02-6021-1056)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사업목적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저변에 확산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신청방법

구분	노사문화 우수기업	노사문화 大賞
신청기간	2020년 상반기 중	2020년 하반기 중
접수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노사발전재단
선정공고	6월말(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10월중(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사업장 단위 신청은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 국내에 모기업이 있는 해외 현지법인 	▶ 2018 ~ 202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외사유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선정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 노사문화 대상 선정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 10부(직 ▶ 신청서 및 추진실적을 저장한 파일(CD 1개)	니전년도 2년간) -

- 반드시 노·사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선정절차



선정기업 지원내용

● 유효기간: 우수기업·大賞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지원내용

지 원 내 용	노사문화 대 상	노사문화 우수기업	담당기관
< 행정상 우대 >			
• 정부포상	대통령·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인증서·인증패	고용노동부
• 정기근로감독	면 제	면 제	"
•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선발 가점	2.5점 가점	2.5점 가점	"
• 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식	우수기업 표식	우수기업 표식	"
• 소개책자 제작 유관기관에 비치	제작·송부	제작·송부	"
• 군수물품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0.5점 가점 (급식분야 0.25)	0.5점 가점 (급식분야 0.25)	국방부
•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우대	0.5점 가점	0.5점 가점	국 방 부
• 세무조사 유예 (모범납세자에 한하며,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	총리상 이상 2년, 장관상 1년 유예	1년 유예	국세청

지 원 내 용	노사문화 대 상	노사문화 우수기업	담당기관
•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1점 가점	1점 가점	중소기업청
•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산재예방 시설·장비 구입자금지원	최우선 지원	우 대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금융상 우대 > • 대출금리	우 대	우 대	농협, 수협
•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우 대	우 대	신한, 하나, 제일, 국민
•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 대	우 대	신용보증기금

[※]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 내용 중 일부내용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140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지원



노사발전재단(☎ 02-6021-1054, 1038)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사업목적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노조 중견간부,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자 등에게 심층적·전문적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하여 노사관계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인적기반 조성

교육기관

- 고려대학교 등 6개 권역별 8개* 교육기관에서 도사관계 전문가 과정 운영
 - *('20년 기준) 서울권(고려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경기·중부권(경기도경제과학 진흥원, 한경대), 부산·경남권(부산대), 대구·경북권(대구대), 광주·전라권(전북대), 대전·충청권(한남대)

교육생 선발

- 매년 2월 중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지원한 신청자 중 교육기관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교육생 선발(기관당 정원 30명)
 - * 미조직 근로자 또는 동일 기업의 노사관계자가 공동으로 지원한 경우 우선 선발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매년 3월~12월 중 120시간 이상, 노사관계 이론, 노동관계법·제도의 이해 등 노사관계 분야(전체 교육시간의 50% 이상), 기타 교육기관 자율적으로 편성한 특강, 세미나, 연수 등의 교육 실시
 - * 전체 교육시간의 75%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 한하여 수료 인정

교육비용

●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총 교육비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교재비, 국내·외 연수비용 등을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 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유형별 고용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청년들의 희망직종, 구직준비 수준에 따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 구직활동 계획서 보고서 심사 결과 고용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에게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 (예시) 계획서 보고서의 구직활동 내용에 보완 필요 시, 취업희망 직종 변경 시 등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및 중 소기업 지원 강화	지원금액 상향(20.1월~):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체인력 1인당 지원금액 월 60만원 → 월 80만원 지원요건 완화(20.1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금 (신설)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2년간 지원
소규모사업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사업)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비율 조정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19년 월 보수 210만원 미만 → '20년 월 보수 215만원 미만) 기존가입자에 대한 지원비율 하향 조정(40% →30%)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 고용비용 등을 고려 부담금 인상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월 부담금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금이 월 1,048,000원 ~1,745,150원에서 월 1,078,000원~1,795,310원으로 인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비율 상향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총 구매액의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6으로 상향
장애인고용장려금 월 지급단가	취업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중증)의 고용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급단가 인상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총 구매액의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6으로상향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 - '18.7월 : 300인 이상(특례제외업종은 '19.7월부터) - '20.1월 : 50~299인 - '21.7월 : 5~49인 •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가족돌봄휴가	맞벌이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단기간의 가족 돌봄휴가 제도 도입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연 최대 10일 사용('20.1.1. 시행) -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연 90일)에 포함 -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 추가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허용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도 동시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20.2.28. 시행)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국아휴직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적용은 제외(일반 육아휴직급여 체계 적용)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지급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사업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업 및 근무혁신 참여 활성화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은 사업장도 새롭게 유연근무 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지원 가능 (지원제외) 신규채용 후 유연근무제 활용 전까지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신설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시우수기업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일: 20.1.1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 원칙 (예외) 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全규모) ②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등 종사자 (全규모) ③ 55세이상 고령자(300인 미만 까지) ④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 까지) (지원요건) 월평균보수215만원이하 노동자 고용, 1개 월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도 지원 (지원금액)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9~11만원 지원 * (5인미만) 월 11만원, (5인 이상) 월 9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재직자 구분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저소득 자영업자 훈련 확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 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 저소득계층 자부담 없음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지원

2020

고용노동정책

한 권으로 통(通)하는

2020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2020년 3월 발행

- 발 행 : 고용노동부
- 편 집 : 혁신행정담당관실

Tel. 044-202-7053, 7055

Fax. 044-202-8022

• 인 쇄 : 디자인범신(042-254-8737)